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문학석사 학위논문

아동학대 양형에 대한 젠더분석 : 어머니의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곽 정 원

아동학대 양형에 대한 젠더분석

: 어머니의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추 지 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곽 정 원

곽정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u>양 현 아 (인)</u> 부위원장 <u>배 은 경 (인)</u> 위 원 <u>추 지</u> 현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 자로 '엄마'가 부각되고,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주요 해법으로 여겨지면서 법이 갖는 영향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를 제기한다. 이에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돌봄의 상황이 피고인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의 처벌 판단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돌봄 상황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양형 결정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조건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여부를 분석하였다. 여성 피고인의 경우, 피해 아동에게 장애 또는 행동어려움이 있거나 여성이 법률혼 바깥의 관계에 있을 때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혼 바깥의 혼인 형태 변수는 남성의 징역형선고에도 정(+)적으로 작용했는데, 그 영향력이 여성에게서 더 크게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돌봄 조건들은 여성과 남성 피고인 모두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아내학대 여부 변수가 남성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어머니노릇은 다양한 자녀 돌봄의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상황 안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개별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녀 돌봄 상황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를 4개의 집단(남성통제형, 재생산어려움형, 기타훈육형, 장애취약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재생산어려움형과 장애취약형은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형 선고에 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달리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높은 중첩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남성통제형은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양형 결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으로 드러난 자녀 돌

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내학대 사실을 가정불화로 축소하거나 물리적 폭력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학대 행위에 주목하지 않는 법적 기소 절차 전반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는가정 내 남성의 통제하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피/가해의 맥락을 간과하고 무력하고 수동적인 피해자 또는 아동학대 공모자인 어머니라는이분법적 평가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와 빈곤이 교차하는 돌봄 상황에서 여성의 이중부담과 양육 어려움, 주양육자로서 여성이 놓인 가정 내 의존관계에서 비롯된 취약성을 간과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법원의 태도를 발견하였다. 특히 미혼여성에게는 이중적 성규범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통제가 나타났고, 나아가 재생산 과정 전반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환원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그간 분절적으로 다뤄져 온 모성 실천과 아동학대 문제를 연계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동학대 담론에서 법의 힘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상황은 법적 논의의 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개인의 양육 환경에 대한 고려와 개선을 넘어서 돌봄 자체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포괄하는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주요어: 아동학대, 양형, 처벌, 젠더, 돌봄, 어머니노릇

학 번: 2020-23894

목 차

제 1 장 서돈	1	
1절 문제제기	1	
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4	
1. 아동학대와 돌봄의 조건	4	
2. 처벌과 젠더	9	
3. 어머니노릇(mothering)과 아동학대	12	
3절 연구자료 및 방법	15	
1. 연구자료	15	
2. 통계분석	17	
3. 내용분석	26	
제 2 장 양형의 성차와 영향요인: 자녀 돌봄의 조건	<u> 1</u>	
	27	
1절 주요 변수	27	
1. 종속변수: 징역형 선고 여부	27	
2. 통제변수: 양형 요인	28	
3. 독립변수: 자녀 돌봄의 조건	30	
2절 징역형 선고 여부의 결정요인과 성차	35	
1. 여성	35	
2. 남성	38	
3. 징역형 선고 여부의 성차 분석 및 비교	41	
3절 소결	45	
제 3 장 돌봄 상황에 따른 아동학대의 유형화와 그	_에	따
른 양형 비교	48	
1절 아동학대 유형화: 군집분석	48	
1. 자녀 돌봄 상황에 기반한 학대 유형 분류		
1. 사이 클럽 ㅎㅎ 내가면면 되게 가장 전기	48	

	2절 징역형 선고 여부의 유형별 결정요인	54
	1. 주요 변수에 대한 유형별 비교	54
	2. 징역형 선고 여부의 결정요인	58
	3절 소결	60
제	4 장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젠더 인식	63
	1절 아내학대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학대	63
	1. 아내학대 사실의 불인지	63
	2. 피학대 여성의 보호능력 판단	68
	2절 돌봄 어려움의 몰이해	73
	1. 아픈 아이에 대한 돌봄과 여성의 이중부담	73
	2. 돌봄자의 돌봄의존성	78
	3절 법률혼 바깥에 있는 여성의 어머니노릇	80
	1. 성적 존재로서 어머니	81
	2. 미혼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유로운 "선택"	84
	4절 소결	89
제	5 장 결론	92
	참고문헌	96
_		
	Abstract ·····	105

표 목 차

[표 1] 연구범위: 적용법조	16
[표 2] 1심선고 결과 성별 교차분석	18
[표 3] 변수 재코딩 방식	24
[표 4] 종속변수 성별 교차분석	27
[표 5] 통제변수와 성별 교차분석	29
[표 6] 독립변수와 성별 교차분석	31
[표 7] 여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 영향 요인	36
[표 8] 남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 영향 요인	39
[표 9]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피고인 성별 영향력	42
[표 10] 징역형 선고 여부의 영향요인 성별비교	43
[표 11] 학대 유형화	49
[표 12] 유형별 특성	51
[표 13] 유형별 징역형 선고 여부 교차분석	54
[표 14] 유형별 양형 요인 비교	56
[표 15] 학대유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59

제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아동학대 사건이 야기하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강화되고 있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 사망사건은 아동학대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집중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으며(오세현, 2021), 2020년 발생한 '양천 양부모 아동학대 사망사건'1)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과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이벌어지기도 했다.2)

주목할 것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서 주요하게 비난받은 대상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별³⁾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모나 양모 같은 '나쁜 엄마'의 전형을 통해 여성이 아동학대행위자로 과잉대표 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아동학대 뉴스에서 주요 키워드로 '계모'가 등장했다는 연구(오세현, 2021)는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

하필 여성에게 범죄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범죄 그 자체는 물론 가부장적 젠더 질서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더욱 비난받아왔다. 페미니스트 법/범죄학 자들은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의 핵심 기제로 이상적인 어머니 상에 대한 모성이데올로기를 지적해왔으며, 나아가 모성이데올로기에

(단위: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남성	55.3	56.6	58.5	55.3	55.5	54.7
여성	44.6	43.4	41.5	44.7	44.5	45.3

^{1)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린다. 이 사건은 양부모 처벌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온라인 해시태그(#) 캠페인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개됨)을 발생시켰고 이후 2021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

²⁾ 동아일보. 2021.05.13. ""정인이 양부모에 엄벌을!" 시민 66명의 진정서엔…[THE사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13/106905149/1

^{3)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대행위자 성비는 다음과 같다.

대한 비판을 넘어 여성들이 어떻게 아동학대라 명명되는 행위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여성들의 구체적인 모성 실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가고 있다(Maher, 1993; West & Lichtenstein, 2006; Gelsthrope, 2010).

다만 국내에서 아동학대와 모성 실천의 문제는 여전히 분절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추지현, 2021). 국내의 여러 아동학대연구를 통해 양육자의 가정 내 돌봄 상황과 그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어왔으나, 여성의 모성 실천 양상과 그차이를 야기하는 삶의 조건을 아우르면서 아동학대 행위를 설명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모성 연구들은 변모하는 모성실천 양상들을 분석해왔으나, 아동학대 발생에서 모성이데올로기가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여성의 모성 실천 양상과 아동학대에 대한 규율, 그 과정에작동하는 모성이데올로기와 젠더(Maher, 1993; West& Lichtenstein, 2006)를 연계적으로 이해하는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법적 틀에서만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은 오랫동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일로 여겨졌다. 2000년대 초반에 와서야 아동학대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다만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과 법정형 상향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과정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대응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 처벌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양형은 법적 판단의 가시적인 척도로써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수준에5)6) 비판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와 대중여론의 목소리가 심화되고

⁴⁾ 최근에는 양천 양부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21년 2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으며, '아동학대 살해·치사죄'신설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정형 상향이 이루어졌다.

⁵⁾ 데일리안. 2023.04.03. "[부모라는 이름의 악마들②] 악마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htt

있으며, 2021년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강화 요청만약 1,5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양형과 처벌강화에 대한 관심이상당하다.7)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처벌강화 중심의 해법이 반복되는 상황은 아동학대 여부와 심각성을 판단하는 권력으로서 법의 힘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처럼 아동학대 담론에서 법의 힘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처벌 판단 과정에 아동학대 발생의 메커니즘이 얼마나·어떻게 고려되고 있냐는 점이다. 아동학대 발생은 양육 환경과 가족 구성원간 관계 등 가정의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노충래, 2002; 정혜숙, 2009; 김나현, 2013; 정선영, 2020), 아동학대 문제를다룰 때 돌봄 상황과 그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머니노릇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상황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에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작동방식을 살펴본 국내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과잉대표되는 상황에서 개별 어머니의 처지와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이해가 법원 판단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돌봄의 조건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페미니스트 비판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모성 실천에 영향을 주는 양육 조건과 돌봄 상황의 차이가 양형 판단에서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그 판단 과정에 모성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ps://www.dailian.co.kr/news/view/1217908/?sc=Naver

⁶⁾ 경남일보. 2022.06.21. "아동학대 부모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86

⁷⁾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022, 1면.

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와 돌봄의 조건

가) 여성의 양육부담

아동학대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의 상당수는 그 과정을 부모의 양육부담감 혹은 양육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포착하고 있다. 양육부담감이란 부모가 아동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정적 영향 및 불편함이자 신체·정서·사회·경제적 부담감으로(박정민·정훈영, 2017), 다수의 선행연구가 양육부담 혹은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을 학대에 더 많이 노출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노충래, 2002; 박명숙, 2002; 김나현, 2013; 김성천·김솔아, 2015; 이봉주, 2020; 이봉주·장희선, 2021).

자녀 양육에서 여성이 일차적 돌봄 주체로 여겨지는 현실8)을 고려할 때, 여성의 양육환경과 돌봄노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이 아동학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아동돌봄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은 양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의 과도한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방임적 허용이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행동과 같이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안지영·박성연, 2002), 적대적이고 통제적인방식의 부적절한 양육 행동은 여성의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김진영 외, 2020)는 연구들은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의 연관성을 지지한다.

여성의 양육부담감과 아동학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가족 내 아동의 수, 가구 소득 수준, 아동 또는 본인의 장애여부 등이 있다. 김형모(2002)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아동의 수와 소득 수준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매개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낮은 가구 소득과 빈곤은 물질적어려움을 매개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선영, 2020). 또한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학대 가능성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박

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용) 자료에서 주양육자의 9 1.3%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명숙, 2002; 김성천·김솔아, 2015; 박정민·정혼영, 2017), 일상생활전반에 걸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아동의 특징은 부모에게 심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박명숙, 2002). 복합학대 발생 케이스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황정미, 2018)를 통해 장애아동에대한 양육 스트레스는 고위험군의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요인이라는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동의 장애뿐만 아니라 양육자 본인의 질병 역시 양육 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 홍승아·이영미(2009)의 연구는 여성에게 중증의 장애가 있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빈곤 상황과 맞물려 양육 어려움이 심화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육 부담은 보호자 단독 양육상황에서 더욱 심화된다. 한부모가족 은 아동 양육에 대한 도움이 부족하고 홀로 감당하는 양육책임으로 인한 긴장상태 및 자녀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자녀의 행동에 과도한 반응을 야기하여 학대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Faller, 1991; 황정미, 2018 재인용, 56).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생 계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양육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최윤정, 2019; 이래혁, 2023). 2021년 여성가 족부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배호중 외, 2022)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가족이 남성 한부모가족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 나는데,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에 대한 돌봄 책임과 남성중심 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에 따른 빈곤 상 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김영란, 2006). 즉, 여성 단독양육자는 생계 부양과 돌봄 책임의 이중부담 속에서 빈곤에 노출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적절한 돌봄 제공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최윤정(2019)은 여성 한부모에게서 보고되는 양 육 스트레스가 가족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 는데, 가족 탄력성이 학대행위인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황환·이병록, 2019)을 고려하면 단독 양육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 스는 학대행위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 이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는 양육 부담과 관련하여 단독양육상황, 특히 여성 단독양육자의 어려움은 여러 연구를 통해 꾸준히 다뤄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19의 발생은 여성의 돌봄 환경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등 양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봉주(2020)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의

73.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증가한 돌봄 부담은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변화가 우울과 양육 어려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이래혁, 2023)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생활 변화가 모단독양육 가정에서만 우울을 매개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증가시킴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렇듯 양육부담감은 그저 개인의 심리 반응이 아니라양육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양육을 둘러싼 제반 조건 및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추지현, 2021)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육부담감을 매개로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돌봄 수행 관련 구체적 요인들, 예컨대 자녀수, 자녀의 장애여부, 경제적 어려움, 단독양육상황 등이 아동학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실제 양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나) 아내학대와의 중복발생

아동학대에 대한 젠더 연구의 가장 뚜렷한 기여는 그것이 아내학 대9)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며, 이 사실은 오랜기간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지지되어왔다(노충래, 2002; 양혜원, 2007; 김재엽 외, 2009; 정혜숙, 2009; 이재경·박명숙, 2014; 배화옥·강지영, 2020).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연구(이인선 외, 2017)는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약 과반수가 자녀학대 가해행위로 이어졌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부부간 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김세원, 2016) 역시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연관성을 지지한다.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데, 이재경·박명숙(2014)의 연구에 따르면, 아내학대는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⁹⁾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아내학대'는 학대 가해자가 남성과 여성인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그 관계가 법률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친밀한파트너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을 일컫는다. 다만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남성 95%, 여성 5%로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폭력을 통해 드러나는 남성통제기제와 가부장적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아내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의 아동학대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배우자 폭력이 이를 목격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심각성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노 충래, 2002)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국내 연구 경향은 피학대 여성 개인의 심리·성격적 특성에 주목하여, 학대 피해를 경험한 여성을 우울과 무기력을 겪는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거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로서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여성의 아내폭력 피해 경험과 우울의 높은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김재엽 외, 2008)와 아내폭력 피해 여성들이 느끼는 좌절과 무기력, 그리고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분석한 연구(정혜숙, 2006)에서 피학대 여성은 폭력 피해로부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아내폭력 피해 여성이 보이는 공격성 수준이 자녀에 대한 비효율적인양육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김재엽 외, 2009)에서 피학대 여성은 분노·적대감 등의 억제된 감정을 자녀에게 부적절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등장한다.

이처럼 피학대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은 피/가해를 오가는 여성의 복합적 경험과 맥락을 간과한다. Maher, L.(1997)는 여성 범죄자의 행위성을 이분화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행위를 촉발하는 젠더를 비롯한 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펴볼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을 수동적인 피해자의 위치로 전락시키거나, 그에 대한 반박으로 여성을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재현하는 형태는 모두 여성의 행위성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아내학대의 피해자 혹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이분법으로 가정 내 여성의 위치를 국한해서 이해할 때 그 과정에 작동하는 구조, 권력 및 지배의 문제를 온전히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구나 여성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과정은 피학대 여성들의 양육 부담이나 양육상황으로만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돌봄이 여전히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상황(안숙영, 2017; 김미라·배은경, 2021)에서, 법이 피학대 여성에게 아동학대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여성들에게 자녀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돌봄 역량을 요구하는 담론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첩 발생 상황에서 법원이 여성의 행위성과

보호자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 아동보호 담론과 여성의 재생산권

국내에서 2010년대를 기점으로 나타난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곧 아동보호 요청의 강화로 이어졌다(안소영·안현주, 2020; 이재임, 2022). 특히 아동의 생명 보호에 대한 요청과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낙태죄 담론이 급격하게 부상했는데, 여성주의 연구를 중심으로 낙태 문제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에 기반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양현아, 2010; 백영경, 2013; 전윤정, 2020).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이란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과 상관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종결을 비롯한 재생산활동에 대한 자유권적 권리이자출산 이후 건전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국가적 책임까지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이다(양현아, 2010; 68). 즉 재생산권은 개인이 본인의 섹슈얼리티 전반을 관리·결정하는 권리이며,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성·임신·출산·임신중단 및 양육 전반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재생산권은 각각 보건의료, 국가정책, 법률을 통해 파편화되어 분절적으로 다뤄져 왔으며,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10)을 통해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관련 후속 입법 및 정책의 부재로 재생산권은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전윤정, 2020).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낙태죄 폐지 이후 아동보호 정책의 일환으로써 영아살해죄 폐지와 형량 강화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자리한 모습이 발견된다(이재임, 2022). 특히 코로나19 이후 폭행이나 신생아 유기로 인하여 영아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영아살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김성희 외, 2021a), 영아살해죄 폐지에 대한 형법 개정안(백혜련, 형법일부개정안, 2021)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제 아동의 생명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낙태죄를 넘어 영아살해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는 사회적 요구가 낙태죄를 넘어 영아살해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는의의 장으로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생명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응책으로 형벌을 통한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은 법이 여

¹⁰⁾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성의 재생산권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임 (2022)은 여성의 임신·출산 그리고 영아살해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젠더화 된 맥락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후기 임신중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를 처벌함으로써법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회로를 재구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젠더화 된 통제 기제가 '아동보호'를 매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추지현, 2021; 52)과 맞닿아있다. 게다가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의 일차적 주체로서 여성에게 아동보호의 책임을 부과하는 형벌화 방식은 여성의 책임 부담만 가중시킬 뿐, 결과적으로 아동보호라는 애초의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있다(추지현, 2021)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보호의 구호 하에 여성에 대한 법적 규율과 통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아동학대행위가 여성 개인의 취약성이나 선택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는 상황이 페미니즘 연구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살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유기·방임과 아동학대치사 사례의 여성 가해자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가 다뤄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처벌과 젠더

흔히 양형(sentencing)은 "유죄로 판결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이민식, 2018)을 지칭한다. 유죄 판결 이후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와 양정을 의미하는 협의의 양형은 그 선행 조건이 되는 유/무죄 판단을 전제로 한다. 양형 분석에 있어 기존의 남성중심적 관점에 의해 왜곡된 범죄학을 비판하고, 범죄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설명에서 젠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장한 페미니스트 범죄학(feminist criminology)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젠더를 주요 쟁점으로 만들어냈다(박철현, 2011).

이러한 문제의식은 범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들로 이어졌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이고 오랜 두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로 기사도 가설(the chivalry thesis)은 여

성 범죄자가 양형에 있어 남성 범죄자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는 주장으로, 여성은 변덕스럽고 미숙하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범죄 책임을 경감시킨다고 설명한다(S. Fernando R., Theodore R. C. & Gang Lee, 2006). 아동학대에 있어 서도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이스라엘에서 미성 년 자녀에게 폭행을 가한(Parent-to-Child Violence)11) 사례의 판결 문을 분석한 한 연구(Chen, G. et al, 2021)는 여성 가해자가 투옥과 같은 엄정한 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여성을 형사사법체계에 의해 처벌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두 번째는 여성 가해자의 범죄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위반 한 것일 때, 이 여성은 더 심각한 범죄자로 낙인되어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악녀 가설(evil women hypothesis)이다(황인정, 2007).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 만, 실상은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연관을 갖는다. 이후의 연구들은 구체 적인 형사절차의 단계, 범죄의 종류, 범행 도구, 계층 및 인종과의 교 차를 통해 이러한 가설들이 적용되는 양상이 매우 이질적임을 보여주 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양형 분석을 진행한 국내 선행연구(이경은, 2015; 이세원, 2015; 정익중 외, 2016; 이세원, 2017; 박연주·김봉선, 2018)를 살펴보면, 주로 가해자의 형량을 이질적 집단별로 비교·분석하거나 처벌 판단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들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양형의 비교·분석을 간과하고 있으며, 성차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라 할지라도 그 성차에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 달리 많은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은 처벌 과정에서 젠더의 작동 방식이 사회 변동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왔

¹¹⁾ 부모의 폭력은 신체적 체벌과 같은 사소한 형태부터 아동학대와 같은 더 심각한 형태의 행위를 포함한다. PCV는 사소한 폭력(e.g., spanking, slapping, shoving, pushing, throwing something)으로 구성되는 반면, 아동학대(child abuse: CA)는 보다 심각한 폭력 행위(e.g., hitting, kicking, beating up, chocking, burning)로 구성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의미한다(Chen, Nicotra, Haviv & Toys, 2021: 2).

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기조 아래 사회적 불안정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으로서 형벌국가가 등장(조연민, 2014)하는 상황에 대한 남성중심적 설명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가 최근 두드러진다. 바캉(Wacquant, 1999)12)은 극화된 도덕주의와 개인의 책임성을 주문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사회 불안을 형벌로써 통제하는 "형벌국가"(penal state)를 통해 강화된 결과를 엄벌주의(punitivness)로 명명한다(추지현, 2014 재인용: 48). 한국에서도 이호중(2013)은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고자하는 논의가 형벌의 확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질서에서 비롯된 국가권력 작동 방식의 일종임을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페미니스트들은 엄벌주의에 기반한 형벌 정책의 강화 가 계층화·젠더화 되어 지속,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엄벌주의는 그저 빈곤층을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하는 사회적 통제기제를 심화시 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Gelsthrope, 2010). 겔스로프 (2010)는 2000년대 이후, 특히 빈곤 여성이 처벌과 복지라는 이중적 규제 속에서 강력하게 규율되어 왔음을 보여준 것을 페미니스트 연구 의 기여로 평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의 모성 실천이 주요한 통제의 대상으로 재부상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자녀를 적절히 양육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가난한 여성이라는 비난과 의심은 복지급여 의 수혜자로서 이들을 규율하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물론 모 성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Fox, M.(2000)는 처벌에 관한 응보 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제시하면서 응 보 논리의 엄격한 적용이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이는 여성들의 돌봄 부담이 양형 과정에 균등한 비율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개인의 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인 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일탈 행동만 남는 응 보적 처벌을 강화하다 보면 기존의 남성중심적 법 해석은 더욱 심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국내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 이러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여성으로 대표되는, 학대행위자의 적극적이고 무자비한 행동들을 나열하고 비난하는데 그칠뿐, 그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은 물론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회적 해

¹²⁾ 로익 바캉(L. Wacquant)은 뉴욕의 '톨레랑스 제로'(Tolerance Zero) 정책으로부터 확산된 전세계적 형벌 강화 경향을 분석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 빈곤층의 증대가 형벌 정책의 강화와 맞물려있음을 지적한다(Wacquant, 2010[1999]).

석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어머니노릇(mothering)과 아동학대

모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제도와 담론의 영향을 받는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인만큼,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왔 다(최은영, 2014). 모성 이데올로기는 근대 이후 강요된 모성 (compulsory motherhood)¹³⁾에서부터 현재의 집중적인 어머니노릇 (intensive mothering)¹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쳤다(이진희·배은경, 2013). 개인의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 는 신자유주의는 모성 역할을 더욱 정교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쟁을 가 열시킨다(조은, 2010).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어머니가 되기에 부족하며, 자녀교육을 잘 관리하여 학업성취를 높이고 이를 위해 교육비용도 마련할 수 있는 노동에의 압박도 받는 상황이다(배은경, 2012). 이와 같이 어머니노 릇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는 완벽한 어머니상이라는 이상적 기준 을 강화한다. '좋은 어머니노릇'에 대한 정의들은 모성신화를 창출하 고 순환적 구조를 통해 다시 문화와 담론 속으로 침투하여 이데올로 기적 구조들을 만들고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정혜숙, 2009). 따라서 이상화된 좋은 어머니와 그에 따르는 어머니 비난은 여성에게 부담감과 죄책감을 내면화하게 만들거나 어머니노릇 자체에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이진희·배은경, 2013). 여성의 어머니노 릇 수행의 구체적 조건과 그 변화 양상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아동 학대를 둘러싼 법 담론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서구의 페미니스트 모성연구를 통해 이전까지 '모성'을 대표하던 가부장적 제도로서의 모성(motherhood)을 벗어나 경험으로서의 모성 인 '어머니노릇'(mothering) 개념이 제시되었다(이진희·배은경,

¹³⁾ 강제적/강요된 모성이란 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운명으로 보며 모든 여성을 잠재적, 예비적, 실제적 어머니로서 간주한다(이재경, 2004).

¹⁴⁾ Hays(1996)에 따르면, 집중적 모성이란 어머니가 일차적 자녀양육자이며, 어머니노릇 이 여성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다. 이는 자녀 중심적, 전문가의 지도, 정서적 열중, 노동집약적이며 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이재경, 2004 재인용: 84).

2013). 전통적으로 모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속성과 연결되어 본능적 으로 타고난 것으로 신화화 되어왔다(이소현, 2022). 그러나 러딕 (2002[1995])은 모성적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여성의 육체가 차지하 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임신이나 출산은 어머니 역할과 다 르다고 본다."어머니 역할은 훈련과 적극적인 관심을 요하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활동"(107)이므로, 여성·남성에 관계없이 누구 나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어머니는 단순히 생물학적 출산자에 국한되 지 않고, 아동의 생명 보존(preservation)과 지적·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nurturance) 활동 및 아동의 사회 적응 능력 계발을 위한 훈육 (training)을 포함한 어머니노릇(mothering)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 다(Ruddick, 위의 책). 리치(Rich, 1976) 역시 여성에게 억압적인 기 존의 제도로서의 모성과 모성 실천(mothering experience)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며, 일상적인 모성 실천이 여성에게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박언주, 2014 재인용, 177). 리치가 여성에게 해방적 잠재력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일상적인 모성 실천의 경험(배은경, 2012)은 러딕의 어머니노릇 수행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험적 모성으로서 어머니노릇과 모성적 사유를 드러 내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왔다(최은영, 2014). 노동자계급 여성들이 중 산층 중심의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수용하면서도 갈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성 경험을 분석한 연구(이재경, 2004),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성 경험을 분석한 연구(최문정, 2010; 이경선, 2016), 본인이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여성에게 가해지 는 모성 비난과 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순응과 저항의 역동을 포착한 연구(김향수·배은경, 2013), 여성수형자를 대 상으로 교도소라는 통제적이고 독특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모성을 분 석한 연구(정주영, 2019), 중산층 전업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책임을 어머니 역할로서 수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성 재구성 의 방식을 포착한 연구(황정숙, 2021) 등이다. 여성들의 모성 실천 경험을 분석한 일련의 작업들은 계층, 장애 등의 요인과 젠더가 맞물 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머니노릇이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모성은 여성 개인에게 단일한 경험이 아니며 모든 여성에게 유사한 경험도 아니라는 점(박언주, 2014)을 고려할 때, 어머니로서 여성들 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머니노릇을 수행하는지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작업은 중요하다.

다만 국내 모성연구는 모성 실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도, 어머니노릇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를 설명하는 작업이 드물다. 외국의 경우 어머니노릇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규제와 양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흑 인 빈곤 여성의 마약 사용이 영아(태아)에 대한 학대로 규정되는 과 정에서 여성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복지의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지적한 연구(Maher, 1993), 이상적 어머니상으로부터의 괴리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돌봄 부담 상황과 장애를 중심으로 여성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연구(West & Lichtenstein, 2006), 돌봄제공자로서의 지위(caretaker status)와 인종, 빈곤 등의 양육 환경이 아동학대 양형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Hanrath & Font, 2020) 등이다. 이러한 일 련의 연구들은 어머니노릇의 복합적 조건, 즉 계급과 인종, 장애, 단 독 양육상황으로 인한 양육 부담 등이 교차하는 돌봄의 맥락이 아동 학대 발생과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모성이데올로기를 경유하여 어머니노릇이 규정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와 빈 곤, 단독양육 등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 조건이 결합하여 구성하는 자녀 돌봄 상황이 아동학대 처벌 판단 과정에서 어머니노릇 평가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양형에 성차는 존재하는가? 자녀 돌봄의 조건은 이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녀 돌봄의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가? 그 차이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인식은 무엇이며, 이때 모성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 하는가?

3절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아동학대 양형에 젠더, 특히 자녀 돌봄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 실패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단 과정에서 돌봄 상황이 다뤄지는 양상과 모성이데올로기의 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종심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판결이 확정된 가정 내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했다. 아동학대 발생 상황에서 자녀 돌봄 수행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기에 판결문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판결문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논리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관련 법조문 해석과 사회·문화적 감정, 그리고 판사 개인의논리와 경험이 반영되는 복합적 사고의 결정체이다(박미랑, 2013). 언어가 현존하는 실체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체에 대한 접근을 조직하고 구성한다고 할 때, 법을 언어체계의 일종으로 접근하면 법 언어는 현실의 인간행위와 제도를 조직하며, 법 언어가 갖는구속력은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한다(양현아, 2006b). 이는 법적 판단이 법을 넘어선 담론은 물론 여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법이 현실을 구성한다는 관점을 담지하면 법에 내재한 편향된 관념과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양현아, 2006b; 이재임, 2021 재인용: 27)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판결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I)"에서 기초조사 자료로 수집한 것을 활용했다.15) 여기서의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로 국한했다. 조사 대상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적용법조는 아래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연구자료의 범위

¹⁵⁾ 연구자가 해당 조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들에게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 자료에 대한 최초 코딩은 공동연구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추가로 재코딩을 진행하 였음을 밝힌다. 연구에 활용된 판결문은 대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서도 누구나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다.

인 '가정 내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행위가 "가정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경우로서 피학대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가정구성원"은 ①민법상 혈족 및 인척을 원칙으로 하되, ②그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사실혼 및 동거 혹은 현재의 교제 상대 및 성적파트너)를 포함하며, ③학대 행위자 일방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한 공범의 피해자와의 관계는 불문했다.

[표 1] 연구범위: 적용법조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21	8	29
		세4조(아등학대절해'시자)	(13.0)	(2.6)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3	0	3
	아중막네서필립	제3조(약중약대중정해)	(1.9)	(0.0)	
		제6조(상습)	3	0	3
		세0소(상급)	(1.9)	(0.0)	
		제71조제1항1의2(음행강	6	39	45
적용법조		요·매개·성희롱등)	(3.7)	(12.7)	
(n=594)		제71조제1항제2호(신체적	84	197	281
		학대)	(52.2)	(64.0)	
	아동복지법16)	제71조제1항제2호(정서적	38	121	159
	아중녹시합107	학대)	(23.6)	(39.3)	
		제71조제1항제2호(유기·	52	15	67
		방임)	(32.3)	(4.9)	
		레70 포 (기 스)	4	3	7
		제72조(상습)	(2.5)	(1.0)	
		총계	161	308	469

다중응답 결과, %는 응답자 기준

¹⁶⁾ 아동복지법은 제17조(금지행위)를 통해 총 11개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된 판례에 나타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학대행위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아동복지법의 제71조(벌칙)를 통해 처벌하며, 상습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 판결문을 수집·분류한 결과, 1심 사건 기준 883건이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피고인은 960명, 피해자는 1,223명이었다. 판결서의 정보는 피해자, 피고인, 사건 단위로 조사표를 분리해 코딩했다. 한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피고인과 여러 방식의 학대가 존재하고 피해자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는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 각각의 자료를 모두 매칭시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1명인 경우에 국한해 사건, 피해자, 피고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1심 선고의 형량과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이에 해당하는 피고인 680명 중 판결서를 통해 성별이 확인되는 469명의 사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적으로 1심 사건 기준 436건이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 469명 중 여성은 161명, 남성은 308명이었다. 피해자는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총 410명으로 이 중 여성 240명, 남성 170명이었다.

판결문이라는 자료의 특성상 아동학대 발생 맥락에 대한 구체적 규명이나 여성들의 경험·의미화 방식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은 한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모성 실천 상황 그 자체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그에 전제된 인식을 읽어내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2.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결정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우선 분석한다. 아동학대 양형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먼저 분석하려는 이유는, 가해자의 성별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별뿐만 아니라 성차를 발생시키는 다른 양형 요인에 대해 탐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식 (2005)은 양형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범죄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법적 변수, 범죄자 개인의 특성과 같은 법률외적 변수 등 여러 요인이 복

적으로 위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제72조(상습범)를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합적으로 작용하는 의사결정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양형 요인 중에서도 자녀 돌봄의 조건에 집중하여 아동학대 양형에서의 성차를 분석했다.

가) 종속변수: 징역형 선고

이처럼 아동학대 양형에서 나타나는 성차와 어머니노릇 수행 조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어떠한 선고형을 종속변수로 삼을 것인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1심 선고형을 살펴보았으며, 아래 [표 2]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한 피고인에게 여러 형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어 다중응답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어렵지만, 실형은 여성 (16.8%)보다 남성이(33.8%), 집행유예는 남성(48.7%)보다 여성 (60.9%)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외에 벌금형은 다른 선고형과 병과되는 경우가 많고 무죄 선고는 케이스가작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1심 선고형 중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괄하는 '징역형 선고 여부'를 양형 결정요인 분석의 종속변수로 결정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해 0='집행유예', 1='실형'으로 더미변수 변환하였다.

[표 2] 1심선고 결과 성별 교차분석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무죄	빈도	4	3	7
		(퍼센트)	(2.5)	(1.0)	
	실형	빈도	27	104	131
1심선고 (n=505)		(퍼센트)	(16.8)	(33.8)	
	징역형의집행유예	빈도	98	150	248
		(퍼센트)	(60.9)	(48.7)	
	벌금	빈도	24	47	71
		(퍼센트)	(14.9)	(15.3)	
	기타	빈도	16	32	48
		(퍼센트)	(9.9)	(10.3)	
전체		빈도	161	308	469
신세		(퍼센트)	(34.3)	(65.7)	(100.0)

다중응답 결과, %는 응답자 기준

나) 독립변수: 자녀 돌봄의 조건

징역형 선고 여부에 자녀 돌봄의 조건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성 실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선행연구(황정미, 2018; 최윤정, 2019; 황환·이병록, 2019)를 통해 양육부담감 증가를 매개로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보호자의 단독양육 여부'이다. 해당 변수는 최초 코딩시 <보호자 구성형태> 문항에서 '모 일방 단독', '부 일방 단독' 또는 '부/모 중 알 수 없는 일방'에 해당하는 응답 케이스와, <위 보호자 이외의 양육지원자 유무> 문항에서 '없음'에 해당하는 응답 케이스를 포괄하여 1='단독양육 해당', 0='비해당'으로 더미변환 하였다.

두 번째 변수는 '피해자 장애 및 행동어려움 여부'이다. 자녀의 장 애는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심화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김성천·김솔아, 2015)에서 분석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장애도 아동 학대 발생 위험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을 분 석한 연구(김경희 외, 2022)에서 보호자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체· 심리 질환은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 기도 한다. 이는 부모에게 신체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 적 학대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황정미, 2018)를 통 해서도 지지된다. 보호자에게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어려움(약물 중독, 정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어머니노릇 수행을 통한 돌 봄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러므로 세 번째 독립변수로 '피고인의 장애 및 행동어려움 여부'를 선 정했다. 각각의 변수는 최초 코딩 시 피해자/피고인 단위에서 <장애 여부 및 종류> 문항과 <평소 행동 어려움 유무 및 종류> 문항을 통 해 장애 및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 케이스를 포괄 하여 1='해당', 0='비해당'으로 더미변환 하였다.

네 번째 변수는 '아동연령'이다. 피해 아동의 연령은 보호자의 양육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평가되어 왔다. 아동이 어릴수록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장시간의 돌봄이 요구되며 더 섬세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어머니노릇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 아동일수록 학대에 대한 인지 및 표현 수준이나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제한적이기때문에 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노충래, 2002; 김세원, 2016). 김기현 외(2020) 연구는 아동의 발달 연령대에 따라학대 특성과 가족 유형에 차이가 나타남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렇듯아동의 연령은 어머니노릇 수행과 아동학대 발생 양상에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독립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피해 아동 연령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0='1세미만', 1='1세이상'으로 분류하여 영아인 피해자를 구분하고자 했다. 영아에대한 유기·방임이 주요 사회문제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영아에 대한학대 사실이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 기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변수는 '혼인형태'로 법률혼 바깥의 보호자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선정했다. 혼인 형태는 아동학대를 넘어 여성 범죄자에 대한 양형 판 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으며(de Vogel & de Spa, 2019; Chen et al, 2021), 여성의 결혼 여부와 자녀 양육 여부는 범 죄 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erner & Demuth, 2014). 다만 여성의 혼인 상태에 따른 어머니 노릇 양상의 차이와 아동학대 양형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혼인 형태를 어머니노릇의 주 요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결문에 대한 최초 코딩 과정에서는 <부모의 현재 결혼 형 태> 문항을 통해 ①이혼(후 별거) ②별거 ③동거(사실혼 혹은 교제 관계, 이혼 후 동거지속 포함) ④법률혼(양측 초혼, 일방 혹은 쌍방의 재혼) ⑤미혼(파트너 없음) ⑥미상 으로 구분하여 보호자의 혼인 형 태를 분류하였다. 분석에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법률혼을 기준으로 혼 인 형태를 분류하여 비교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0='미상', 1='법률 혼'(①②④), 2='동거·미혼'(③⑤)로 재코딩하였다.¹⁷⁾ 다중회귀분석에

¹⁷⁾ 사실혼과 동거 관계, 미혼 상태에서의 양육 환경과 어머니노릇의 수행은 명확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게 된 이유는, 우선 통계 분석을 위한 최소 케이스 수를 충족하고자 함이었고, 판결문의 정보로는 사실혼과 동거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최초 코딩 과정에서 병합하여 응답하였기 때문에 추후세부적으로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률혼 변수에서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이혼/별거한 경우는 매우 다른 어머니노릇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지만, 우선 해당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고자 한 목적이 여성(혹은 남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 안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해 왔는지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함

서는 혼인 형태 미상인 경우를 0(참조변수)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했다.18)

여섯 번째 변수는 '가정 내 자녀수'이며 일곱 번째 변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돌봄제공자의 양육부담감이 증가하고 이는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Webster-Stratton, 1988; 김성천·김솔아, 2015 재인용)는 점에서 자녀의 수는 어머니노릇 수행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역시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한 돌봄 부담 증가를 야기하여 아동학대 위험요인 중 하나(김형모, 2002)로 제기되므로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양형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녀수 변수의 경우 1='1명', 2='2명', 3='3명 이상'으로 코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를 0(참조변수)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경제적 어려움 변수는 <보호자의 양육 관련 상황>문항에서 '경제적 부양 부담 혹은 생계 곤란'에 응답된 케이스를 1='해당'으로, 이외의 응답을 0='비해당'으로 재코딩하여 더미변환 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한 여덟 번째 독립변수는 '아내학대여부'이다. 아내학대 상황은 여성에게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야기하고(이재경·박명숙, 2014), 부정 정서나 공격적 태도를 유발하여 피학대 여성의 돌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정혜숙, 2006; 김재엽 외, 2008). 아내학대 상황과 아동학대 발생의 높은 연관은 다수의 선행연구(김재엽 외, 2009; 정혜숙, 2009; 이재경·박명숙, 2014; 김세원, 2016; 이인선 외, 2017; 배화옥·강지영, 2020)를 통해 지지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 이용된 판결에서도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동시발생사건이 전체의 13.6%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이전에 아내학대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의 25.2%로 확인된다. 이처럼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높은 빈도로 중첩발생되는 상황에서 남성 피

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양육 변수를 통해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와 쌍방 양육하는 경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혼/별거한 경우와 법률혼을 유지한 경우를 통합해 재코딩하였다.

¹⁸⁾ 통계분석에서 미상값은 통상적으로 결측처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으나, 판결문이라는 자료의 특성상 미상값을 제외하기보다는 분석에 함께 투입하여 비교하고자 했다. '피고인의 혼인 형태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혼인 관계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피고인의 혼인 형태가 판단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때 법률혼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고인의 아내학대 가해행위 또는 여성 피고인의 아내학대 피해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결문 최초 코딩 시 <가정내 기타 학대 발생 유무 및 종류> 문항에서 '아내학대'에 응답된 경우와 <학대 행위 맥락 유형> 문항에서 '아내학대중첩형'에 응답된 경우를 포괄하여 '아내학대여부' 변수를 재코딩하였다. 전자는 아동학대와의 동시 발생이 아니라 평소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었으며, 후자는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동시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아내학대여부 변수는 0='비해당', 1='해당'으로 더미변환하여 분석에투입하였다.

다) 통제변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어머니의 자녀 돌봄 조건이 아동학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피고인 및 범행 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합의에 기반한 처벌불원의사는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여타범죄에서도 양형 감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세원, 2015; 정익중 외 2016; 김수정, 2020).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의사는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채택되어있어, 법관의 양형 판단 결정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처벌불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과정에서 통제하고자 한다. 판결문 최초 코딩 시 <피해 당사자(아동)의 가해자 처벌의사>와<피해자 외 피해자측의 가해자 처벌 의사> 문항에서 '처벌불원'에응답된 경우를 포괄하여 처벌불원의사 '있음'=1, 이외에는 '없음'=0으로 재코딩하였다. 여기서의 처벌불원은 명시적인 법적 합의 등을통해 처벌불원의사가 양형요인으로 채택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선처의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두 번째 변수는 피고인의 '전과여부'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범죄 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박철현, 2011; 이세원, 2017; Doerner & Demuth, 2014; de Vogel

& de Spa, 2019; Hanrath & Font, 2020). 이때 범죄전력은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대법원의 아동학대 양형기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판결문의 정보를 통해 명확하게 범죄 전력 유무를 파악하기에도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형사처벌전력은 동종과 이종범죄전력을 모두 포함하며,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경우를 1='있음'으로, 이외에는 0='없음'으로 더미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세 번째로 통제된 변수는 '경합범 여부'이다. 법적 판단 과정에서 범죄의 경합 여부는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데, 형법상의 경합범 양형 규정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을 통해서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박형관, 2018). 범죄 경합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행연구(Doerner & Demuth, 2014)를 통해 입증된 바 있는데, 단일범에 비해 경합범(multiple counts)일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아내학대를 비롯한 폭력·상해죄 등의 이종범죄와 경합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종경합을 기준으로 경합범을 분류하여 통제하고자 했다. 최초 코딩 시에는 <경합범 여부> 문항을 통해 ①해당없음 ②동종경합 ③이종경합 ④동종+이종으로 구분하여 분류를 진행했으나,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 재코딩 과정에서 0= '비해당'(①,②), 1='해당'(③,④)으로 구분하여 이종경합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사건을 동종경합 혹은 단일범행과 분류했다.

네 번째 통제변수는 범행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이다. 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두 가지 법조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법률에서 제시하는 형량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서 신체·정서적학대, 유기·방임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월~1년6월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기본 형량이 2년6월~5년이며,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4년~8년, 아동학대살해는 17년~22년으로 양형기준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박연주·한창근(2020)의 연구는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기소된 죄명이 선고형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적용법조가 양형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적용법조'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해당 변수는 범행의 적용법조가 아동복지법인 경우=0, 아동학대처벌법인 경우=1로 코딩되었다.

마지막 통제변수는 아동학대의 '피해지속여부'이다.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 인자를 분석한 연구(이세원, 2017)에서 학대 행위의 상 습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난다.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에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변수는 피해의 지속성을 판결문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0='일회성', 1='피해지속'으로 재코딩하였다.

통계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재코딩 방식을 정리하여 아래 [표 3]에 제시했다.

[표 3] 변수 재코딩 방식

	변수	코딩		
종속변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부	0 = 집행유예 1 = 실형		
	단독양육	0 = 비해당 1 = 해당		
	피해자 장애 및 행동어려움 여부	0 = 비해당 1 = 해당		
	피고인 장애 및 행동어려움 여부	0 = 비해당 1 = 해당		
	피해이동 연령	0 = 1세 미만 1 = 1세 이상		
독립변수	혼인형태	0 = 미상 1 = 법률혼 2 = 동거, 미혼		
	자녀수	1 = 1명 2 = 2명 3 = 3명 이상		
	경제적 어려움	0 = 비해당 1 = 해당		
	아내학대 여부	0 = 비해당 1 = 해당		
	처벌불원의사	0 = 없는 1 = 있 <mark>다</mark>		
통제변수	전과여부	0 = 없음 1 = 있음 (형사처벌전력 있음)		
	경합법_이종	0 = 비해당 1 = 해당 (이종경합범)		
	적용법조	0 = 아동복지법 1 =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지속여부	0 = 일회성 1 = 피해 지속		

라) 분석 방법

통계분석의 목적 및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에서 자녀 돌봄의 조건이 양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성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 집단에 대해 교차분석 및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진행했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값이 이항계수인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징역형 선고 여부가 집행유예 해당 '0', 징역형 해당 '1'로 값이 부여된 이항변수이므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진행 시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건을 제외하였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순수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립적'일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변화가나타나는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를 확인하기에 회귀분석은 한계가 있다(김태근, 2006). 자녀 돌봄의 조건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않으며, 서로 교차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양육 상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독립변수들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회귀분석에 함께 투입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총 8개로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전부 생성하여 분석에 투입하기에는 회귀식이나 모형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돌봄의 조건을 기준으로 학대행위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서 드러나는 돌봄 상황의 차이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대상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대상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다변량분석기법이다(조정우, 2006).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K-평균 군집분석은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지정하고, 각 군집의 결과를 비교하여 군집별 특성이 가장 잘 파악되는 k개의 군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희창·조광현,

2006).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돌봄 상황의 특성(양육 부담, 재생산어려움, 아내학대상황)이 잘 드러나는 집단으로 유형이 분류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방법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군집수는 3개에서 6개까지 중에 각 군집의 빈도가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나고, 돌봄 상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4개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학대 유형에 따라 주요 변인인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고, 유형별 돌봄 상황의 차이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내용분석

아동학대 사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내용분석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방법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판례분석과 같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서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성희 외, 2021b). 내용분석은 기록물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며, 텍스트에서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어 방법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타당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Anderson et al., 2001: Riffe et al., 2014, 정익중 외 2016 재인용: 139) 판결문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은 여성들의 취약성과 가해행위에 내재한 젠더화된 맥락을 도외시하고 특정한 여성 집단의 개인들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힘을 확산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이재임, 2022). 법언어를 통해 현실이 표상되고 의미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법 언어가가진 구속력이 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양현아, 2006b)을 상기하면, 여성들이 법 언어를 통해 규정되고 다뤄지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은 일차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436건의 판례를 전부 검토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양형 결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도출된 자녀 돌봄 상황이 발견되는 사례를 추려 판단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제2장 양형의 성차와 영향요인: 자녀 돌봄의 조건

1절 주요 변수

아동학대 사건에서 어머니노릇의 양상과 그 조건들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에서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아동학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돌봄 조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1. 종속변수: 징역형 선고 여부

종속변수로 선정한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성별에 따라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성별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 피고인은 실형(21.6%)보다 집행유예(78.4%)를 선고받은 경우가 약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피고인도실형(40.9%)보다는 집행유예(59.1%) 선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긴했으나, 그 차이가 여성 피고인과 비교할 때 적다.

[표 4] 종속변수 성별 교차분석

			여성	남성	χ^2	
징역형 (n=379)	집행유예	빈도	98	150		
		(퍼센트)	(78.4)	(59.1)	- 13.861***	
	 실형	빈도	27	104		
	2월 영	(퍼센트)	(21.6)	(40.9)		

^{*} p<.05 ** p<.01 *** p<.001

다만 남성보다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내려진다는 것이 반드시 여성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 사실에 대한 양형 결정 과정에는 성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적용법조·피해 결과의 심각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온전히 성별에 따른 차이로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돌봄 의무라는 모성 이데올로기로 인한 것일 수 있다 (Doerner & Demuth, 2014)는 설명이 제시되기도 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력적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다 (Chen, G. et al, 2021)는 점, 즉 범행의 심각성이나 학대 피해 결과와 같은 요인이 양형에서의 성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즉, 징역형 선고와 그 집행유예 여부에 있어 나타난 성차는 학대의 경중, 전과, 합의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효과일 수 있다.

2. 통제변수: 양형 요인

그러므로 위의 결과만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있어 성차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적 양형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양형에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범행 특성과 관련된 양형 요인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처벌불원의사의 경우, 남성(32.1%)이 여성(26.1%)에 비하여 피해 자와 피고인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피-가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세원, 2015)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남성과 여성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에 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 다.

전과가 있는 경우는 남성(43.5%)이 여성(18.6%)보다 많았으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이외의 적용법조가 존재하는 경합범 역시 남성(61.0%)이 여성(27.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 피고인이 더 많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으며, 경합범인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oerner & Demuth, 2014; de Vogel & de Spa, 2019). 특히 남성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 범행은 아내학대와 같은 가정 내 기타 폭력 행위의 중첩으로 인한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이종범죄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경합 범죄와 같은 범행 특성에서 나타난 차이는 징역형 선고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실형 선고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표 5] 통제변수와 성별 교차분석

구분			여성	남성	전체	χ^2
	없음	빈도	119	209	328	
처벌불원 의사	<u> </u>	(퍼센트)	(73.9)	(67.9)	(69.9)	1 0 4 4
(n=469)	있음	빈도	42	99	141	1.844
	从日	(퍼센트)	(26.1)	(32.1)	(30.1)	
	없음	빈도	131	174	305	
전과여부		(퍼센트)	(81.4)	(56.5)	(65.0)	- 28.765***
(n=469)	있음	빈도	30	134	164	20.703
	ДΕ	(퍼센트)	(18.6)	(43.5)	(35.0)	
	비해당	빈도	117	120	237	
경합법_이종	100.9	(퍼센트)	(72.7)	(39.0)	(50.5)	- 48.065***
(n=469)	해당	빈도	44	188	232	40.003
	911-3	(퍼센트)	(27.3)	(61.0)	(49.5)	
	복지법	빈도	135	300	435	
적용법조	· · · · · · · · · · · · · · · · · · ·	(퍼센트)	(83.9)	(97.4)	(92.8)	- 28.878***
(n=469)	처벌법	빈도	26	8	34	20.070
	시된旧	(퍼센트)	(16.1)	(2.6)	(7.2)	
	일회성	빈도	65	132	197	
피해지속여부	크위 8	(퍼센트)	(40.6)	(43.0)	(42.2)	- 0.243
(n=467)	지속	빈도	95	175	270	0.245
	시 투 	(퍼센트)	(59.4)	(57.0)	(57.8)	
지귀		빈도	161	308	469	
전체		(퍼센트)	(34.3)	(65.7)	(100.0)	

*p<.05 , **p<.01 , ***p<.001

법정형이 상이한 적용법조에 있어서는, 여성 피고인(16.1%)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치사 및 중상해와 같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경우가 남성 피고인(2.6%)보다 약6배 이상 많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 상해' 법조를 통해 아동복지법의 학대보다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여성에게서는 임신중단 및 돌봄 부담으로 인해 영아에 대한 유기와 방임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형태의 학대가 더

욱 많다는 점이 지적되는데(추지현, 2021), 실제로 남성(3.9%)보다여성 피고인(14.3%)에게서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피해 결과의 차이가 남성보다 여성 피고인에게 처벌법이 더 높은 비율로 적용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반복, 지속되는 것 역시 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여부에 따른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3. 독립변수: 자녀 돌봄의 조건

본 연구는 양형의 성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녀 돌봄의다양한 상황에 주목한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녀 돌봄에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성차를 확인했다. 그 결과를아래 [표 6]에 제시하였으며, 자녀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피고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자가 본인 단독인 경우는 남성 피고인(8.1%)보다 여성 피고인(26.7%)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학대행위자에게서 단독 양육 상황이 더 많이 보고된다는 점은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단독 양육자인 여성학대행위자의 높은 비율은 임신과 출산 이후 양육의 과정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동학대 행위와 연관됨을 의미하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논의가 다뤄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표 6] 독립변수와 성별 교차분석

구분			여성	남성	전체	χ^2	
	ાગાના	빈도	118	283	401		
단독양육	비해당	(퍼센트)	(73.3)	(91.9)	(85.5)	00.470***	
(n=469)	해당	빈도	43	25	68	- 29.479***	
	애당	(퍼센트)	(26.7)	(8.1)	(14.5)		
	어 o	빈도	88	104	192		
피고인장애및어려움	없음	(퍼센트)	(54.7)	(33.8)	(40.9)	10.007***	
(n=469)	0) 0	빈도	73	204	277	19.087***	
	있음	(퍼센트)	(45.3)	(66.2)	(59.1)		
	어 o	빈도	119	259	378		
피해자장애및어려움	없음	(퍼센트)	(73.9)	(84.1)	(80.6)	7.004**	
(n=469)	0) 0	빈도	42	49	91	7.004**	
	있음	(퍼센트)	(26.1)	(15.9)	(19.4)		
	1 ਮੀਜ਼ੀਜ਼ੀ	빈도	32	17	49		
피해아동 연령	1세미만	(퍼센트)	(20.8)	(5.7)	(10.8)	0.4.100***	
(n=454)	4 01 .1 01	빈도	122	283	405	- 24.139***	
	1세이상	(퍼센트)	(79.2)	(94.3)	(89.2)		
		빈도	53	82	135		
	미상	(퍼센트)	(32.9)	(26.6)	(28.8)		
혼인형태 (n=469)	미르조	빈도	75	182	257	-	
	법률혼	(퍼센트)	(46.6)	(59,1)	(54.8)	6.959^{*}	
(II— 1 00)	동거,	빈도	33	44	77		
	미혼	(퍼센트)	(20.5)	(14.3)	(16.4)		
	1 223	빈도	90	153	243		
	1명	(퍼센트)	(63.4)	(67.1)	(65.7)		
자녀수	ord ord	빈도	39	60	99	-	
(n=370)	2명	(퍼센트)	(27.5)	(26.3)	(26.8)	0.995	
		빈도	13	15	28	-	
	3명이상	(퍼센트)	(9.2)	(6.6)	(7.6)		
		빈도	126	290	416		
경제적어려움	비해당	(퍼센트)	(78.3)	(94.2)	(88.7)		
(n=469)		빈도	35	18	53	- 26.650***	
	해당	 (퍼센트)	(21.7)	(5.8)	(11.3)		
		빈도	155	196	351		
	비해당	· (퍼센트)	(96.3)	(63.6)	(74.8)		
아내학대여부						59.811***	
(n=469)	=11=1	빈도	6	112	118		
	해당	(퍼센트)	(3.7)	(36.4)	(25.2)		
11		빈도	161	308	469		
전체	-	(퍼센트)	(34.3)	(65.7)	(100.0)	=	

피고인에게 장애 및 행동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여성 45.3%, 남성 66.2%로 적절한 돌봄 제공의 어려움이나 본인 스스로에 대한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해당 변수가 장애뿐만 아니라 행동어려움이 포함된 결과임을 고려하면, 폭력 사용의위험성이나 음주문제와 같이 범죄자에게서 드러나는 일탈적 성향이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연구(이민식·김혜선, 2009)와상응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는 법원이 학대행위자가 남성인 경우에피고인의 질병이나 공격성 등을 판단 과정에서 적극 해석하는 경향이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반대로, 피해 아동에게 장애 및 행동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남성일때(15.9%) 보다 여성일 때(26.1%)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을 보편적으로 더 도맡고 있는 상황이아동학대 발생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을 드러낸다.

피해 아동이 1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남성(5.7%)보다 여성 (20.8%) 피고인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는데, 이는 여성이 영아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세 미만 영아는 돌봄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필요로 하기에(이세원, 2016) 어머니노릇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영아 양육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여성의 아동학대 가해행위가 연관되었을 수 있다. 더불어 1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성차는, 임신과출산으로 인해 영아와 물리적으로 관계되어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이아동학대 논의와 연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피고인의 혼인형태는 미상인 경우가 전체의 28.8%로 약 1/3 정도의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는데, 단독 피고인인 경우 정확한 혼인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미상값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혼인형태 변수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일반화하여 평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혼인형태를 알 수 있는 경우에서 법률혼은 남성(59.1%)이 여성(46.6%)보다 많은 것으로, 동거·미혼인 경우는 여성(20.5%)이 남성(14.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불안정한 이성애 관계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이 아동학대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영아유기·방임 행위과 같이 주로 미혼 여성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행위로 인해 비법률혼 관계에서 여성 피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수 변수는 유일하게 피고인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36.7%) 피고인이 남성(32.9%)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성 21.7%, 남성 5.8%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4배 더 빈곤 상황에서 학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은 양육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다(김형모, 2002; 정선영, 2020). 즉 아동학대행위자가 여성일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 가해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결과는 빈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직접적인 돌봄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과 달리, 남성은 훈육 목적, 위협 등 다른 동기가 학대와 연관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친밀한파트너폭력(IPV)의 동시 가해자인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 3.7%, 남성 36.4%로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연구에서 IPV를 '아내학대'로 명명하고자 한 이유와도 궤를 같이하며, 남성이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첩적인 가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입증한다. 이처럼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높은 중첩 발생률은 남성의 아내학대 가해행위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학대 상황에서 비롯된 보호자 간의 통제적인 관계양상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지는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아내학대 피해를 입은 여성이 동시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추후 4장에서살펴보고자 한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동시 가해자로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피학대 여성이 아동학대 가해 자가 되기보다는 아내학대 가해자인 남성이 아동학대 가해행위에도

더 많이 연루됨을 의미한다. 이는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정혜숙, 2006; 김재엽 외, 2009; 박명숙, 2014) 이 피학대 여성을 중심으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이나 무기력함에 기반하여 아동학대 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 것의 한계를 드러낸다. 중첩적 학대의 주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점은, 가정 내 남성의 통제 권력이 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은 단독 양육 비율이 높고, 피해 아동에게 장애 또는 행동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아동은 주로 1세 미만의 영아이고, 양육 중인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 많았다. 또한 여성학대행위자가 법률혼 바깥의 이성애 관계에 놓 인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다. 이와 달리 남성학대행위자는 대부분 파트너와 함께 양육을 부 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본인에게 장애 및 행동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 많았고, 법률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단독양육, 자녀의 장애, 다수의 자녀, 빈곤과 같은 조건들은 양 육 부담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발생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김형모, 2002; 박명숙, 2002; 김성천·김솔아, 2015, 정선영, 2020; 이래혁, 2023), 여성이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돌봄 부담과 양육 어려 움이 아동학대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 피 고인이 비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가해 비율도 남성 피고인에 비해 훨씬 높게 보고되는 점은, 법률혼 바깥의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히 미혼 여성과 같이 출산 직후 영아 돌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재생 산권 상황이 여성들의 아동학대 가해행위에 부정적 연관성을 갖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자녀 돌봄 상황에서 오는 양육 어려움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남성 권력에 대한 인정과 훈육 등 의 이유로 아동학대행위에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된다(추지현, 2021). 이처럼 여성학대행위자와 남성학대행위자에게서 나타나는 자녀 돌봄 조건의 차이는 양형의 성차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는지 짐작케 하다.

2절 징역형 선고 여부의 결정요인과 성차

위와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별에 따라 자녀 돌봄 조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러한 차이가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2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판단 과정에서 젠더의 작동방식을 탐색하는데 있어 우선 피고인의 성별이 갖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여성과 남성으로 집단을 나누어 징역형 선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여성

먼저 여성 피고인 집단만을 대상으로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아래 $[\pi 7]$ 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Hosmer \& Lemeshow \chi^2 = 7.431, p > .05), 모형은 <math>54.0\% (Nagelkerke R^2)$ 의 설명력을 보였다.

양형요인만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model 1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처벌불원의사, 경합범 여부, 적용법조 변수만 징역형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처벌불원의사가있을 때 여성 피고인이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처벌불원의사가 양형의 감경 요소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합범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 피고인의 범행이 이종경합에해당할 경우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단일범보다 경합범에게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Doerner & Demuth,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적용법조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여성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었을 때 실형 선고에 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아동학대처벌법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률의 제정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표 7] 여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 영향 요인

				여성 (N	V=109)		
변수			Model 1			Model 2	
		В	SE	OR	В	SE	OR
처벌불원의사	있음	-2.112*	.814	.121	-2.480*	1.059	.084
전과여부_형사처벌	있음	.074	.722	1.076	.705	.927	2.024
경합범_이종	해당	2.275**	.685	9.730	3.259**	1.040	26.031
적용법조	처벌법	2.836***	.665	17.046	2.932**	.969	18.756
피해지속여부	지속	.771	.586	2.163	1.947*	.877	7.009
단독양육	해당				.011	.818	1.011
피고인장애및어려 움 피해자장애및어려	해당				.583	.724	1.792
피해자장애및어려 움	해당				2.163*	.863	8.699
피해자연령	1세이상				223	.916	.800
혼인형태	법률혼				1.984	1.101	7.271
C C 0 'II	동거,미혼				2.913*	1.184	18.417
자녀수	2명				926	.812	.396
71-11	3명이상				-2.373	1.512	.093
경제적어려움	해당				112	.746	.894
아내학대여부	해당				1.773	1.542	5.886
상수	상수		.702	.055	-6.351***	1.715	.002
-2Log Likel	ihood	87.334			71.069		
Nagelkerke	e R ²	.386			.540		
Hosmer & Lem	eshow χ ²	5.1	09(p=.530	1)	7.4	31(p=.491)

^{*}p<.05, **p<.01, ***p<.001

자녀 돌봄의 조건을 함께 투입한 model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적용법조와 피해지속여부 변수에서 model 1과는 양형 영향력에 차이가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법조 변수의 영향력이 model 2에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형이 여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독립변수인 자녀 돌봄조건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적용법조 변수의 영향력을 약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해지속여부 변수는 통제변

수만을 투입했을 때와 달리 여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학대의 지속성이 자녀 돌봄의 조건과 상호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투입된 변수들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로는 그 상호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여성 피고인의양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피해지속 변수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상호작용을 일부 유추해볼 수 있는데, 이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해석하면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자녀 돌봄 조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장애 및행동어려움 변수와, 혼인형태 변수에서만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먼저 피해자장애및행동어려움 변수를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장애(또는 행동어려움)가 있을 때 여성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피해 아동의 취약성은 아 동학대범죄에 대한 주요 양형 인자로 보고되기도 하는데(이세원, 2017), 장애가 그 취약성을 강화하여 징역형 선고 여부에 정적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지속여부가 model 2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결과를 피해자 장애 변수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통해 해석해볼 수 있다. 피해자장애및행동어려움 변수와 피해지속여부를 교차분석하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때 학대 피해가 지속된 경우 는 75.3%로 장애 없고 피해 지속된 경우(53.7%)보다 많았으며, 피 해 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른 학대피해지속여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χ²=13.752, p<.001). 피해 아동의 장애 여부가 여성 피 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상황에서, 피 해의 지속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해지속여부 변수의 양형 영향력 이 model 2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을 변수 간 상호작용 가 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장애 변수가 갖는 정(+)적인 영향력은 장애아동 양육에서 수반되는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동 학대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돌봄 어려움이 법원 의 처벌 판단 과정에 참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을 갖게하며, 이에 대해서는 4장의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해 상세히 살펴 볼 것이다.

여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자녀 돌봄의 조건인 혼인형태를 살펴보면, 법적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거 또는 미혼과 같은 법률혼 바깥의 관계에 있음이 주요하게 다뤄 진 경우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미혼여성과 같이 법률혼 바깥의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서정애, 2009; 김혜영, 2013)이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4장에서 비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위 논의를 종합해보면, 여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췄으나, 이종 경합범인 경우에는 실형 선 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학대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으로 기소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은 아동복지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학 대 행위 및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법조 적 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법정형의 영향력이 model 2에서 완화되었다는 점은, 자녀 돌봄의 조건들이 결과적으로 법정형을 넘어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피고인의 아동학대행위가 지속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는 피해 아동의 장애 여부와 같은 어머니노릇의 구체적인 수행 상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 돌봄 상황에서 양형의 차이가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학대 행위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비법률혼 관계에 있음이 판결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경우에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돌봄의 양육 부담과 미혼여성을 비롯해 법률혼 바깥에 있는 여성의양육 어려움 등이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고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해당 여성들의 아동학대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엄격한 판단의 기준을 적용하여 양형에 반영한결과일 가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2. 남성

다음으로 남성 피고인을 대상으로 징역형 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 8]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징역형 선고에 대한 영향력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Hosmer & Lemeshow $y^2 = 12.019$, p

>.05), 모형은 35.4%(Nagelkerke R^2)의 설명력을 보여 여성 모형보다는 낮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남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 영향 요인

				남성 (N	N=185)		
변수			Model 1			Model 2	
		В	SE	OR	В	SE	OR
처벌불원의사	있음	-1.423***	.388	.241	-1.241**	.417	.289
전과여부_형사처벌	있음	.656	.337	1.927	.848*	.373	2.335
경합범_이종	해당	1.417***	.398	4.123	1.221**	.462	3.390
적용법조	처벌법	1.640	1.028	5.153	1.458	1.161	4.299
피해지속여부	지속	.636	.355	1.888	.456	.379	1.578
단독양육	해당				.816	.624	2.262
피고인장애및어려 움	해당				.553	.408	1.739
피해자장애및어려 움	해당				.357	.556	1.428
피해자연령	1세이상				772	.653	.462
혼인형태	법률혼				.764	.507	2.148
근건생대	동거,미혼				1.661*	.658	5.266
자녀수	2명				.792	.420	2.208
사네ㅜ	3명이상				150	.915	.860
경제적어려움	해당				738	.777	.478
아내학대여부	해당				672	.438	.511
상수	상수		.457	.202	-1.850*	.868	.157
-2Log Like	lihood	215.239			196.915		
Nagelkerk	e R ²	.251			.354		
Hosmer & Lem	neshow χ ²	12.	.960(p=.07	3)	12.	.019(p=.150)

^{*}p<.05, **p<.01, ***p<.001

통제변수인 법적 양형요인을 살펴보면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 전력, 이종경합 변수만 징역형 선고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피고인 역시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실형보다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은 독립변수를

함께 투입한 model 2에서만 남성 피고인에게서 유의미한 양형 요인으로 나타난다. 아내학대여부가 분석에 투입되면서 폭행 및 상해와같은 기타 폭력 전과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분석 결과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종경합 여부의 경우 독립변수 투입 이후 그영향력이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꾸준히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며, 남성 피고인이 이종경합범일수록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처벌불원의사와 경합범 여부 변수는 피고인의 성별과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돌봄의 조건이 남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혼인형태 변수에서 동거·미혼에 해당하는 경우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여성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남성 피고인이 동거 또는 미혼의 상태에 있다는 점이 판결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때 징역형 선고 여부에서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의미심장하다. 이는 계모로 과잉대표되는 재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정수정 외, 2018)의 영향일 수도 있고,법률혼 바깥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온정적으로 참작하지 않고 학대 행위의 발생을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법원의 보편적 태도를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혼인형태변수 외에는 자녀 돌봄 관련 조건들이 남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에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남성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종경합범에 해당하는 남성 피고인은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영향력은 자녀 돌봄 조건과 함께 분석에 투입된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돌봄 조건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이 비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가해행위를 했음이 판 단 과정에 명시적으로 나타날 때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 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혼 바깥의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양육 상황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아내학대 발생 여부가 남성 피고인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노충래, 2002; 정혜숙, 2009; 이재경·박명숙, 2014; 김세원, 2016; 배화옥·강지영, 2020)를 통해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높은 중첩 발생 가능성이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학대행위자의 아내학대 사실이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범행의 경합 여부를 통제하고도 이러한 결과가나타났다는 점은, 남성 피고인의 아내학대 사실이 아동학대에 대한처벌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내학대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가정 내 남성중심적 구조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판단 과정에서 다뤄지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4장을 통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3. 징역형 선고 여부의 성차 분석 및 비교
 - 가)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피고인 성별 영향력

여성과 남성 피고인 각각의 징역형 선고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성별이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9]를 보면, 법적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여성보다 남성 피고인에게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 전력, 이종경합 여부, 적용법조와 피해지속여부 같은 법적 양형요인들은 전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할 때,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영향 요인을 통제하고도 피고인의성별은 양형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때 남성 피고인이 여성 피고인에 비해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피고인 성별 영향력

			75	역형 선고 여	여부 (N=379))		
변수			Model 1		Model 2			
		В	SE	OR	В	SE	OR	
처벌불원의사	있음	-1.087***	.280	.337	-1.123***	.283	.325	
전과여부_형사처벌	있음	.698**	.253	2.009	.577*	.260	1.780	
경합범_이종	해당	1.686***	.286	5.400	1.501***	.292	4.486	
적용 법조	처벌법	2.212***	.458	9.133	2.655***	.493	14.232	
피해지속여부	지속	.761**	.258	2.140	.736**	.261	2.087	
sex	남성				1.021**	.323	2.777	
상수		-2.308***	.324	.099	-2.888***	.391	.056	
-2Log Like	lihood	409.373			398.441			
Nagelkerke R ²		.261			.292			
Hosmer & Lem	eshow χ ²	3.9	910(p=.689)	3.202(p=.921)			

^{*}p<.05, **p<.01, ***p<.001

자녀 돌봄 조건이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계분석으로는 위와 같이 남성에게서 실형 선고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여성에 비해 높은 남성의 실형 선고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와 관련해 법률외적 상황 중 자녀돌봄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적용법조로 환원되지 않는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나 훈육·분노 표출 등을 이유로 하는 남성의 아동학대 행위 양태 등이 영향을 미쳤을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차그 자체보다 양형 결정에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을 자녀 돌봄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징역형 선고 여부의 영향 요인 성별비교

앞서 피고인을 여성과 남성 집단으로 나눠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나는 성차를 직접 비교해보고자 각각의 분석 모형(model 2)을 아래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징역형 선고 여부의 영향 요인 성별비교

		여	성 (N=109)	남	·성 (N=185)
변수			Model 2			Model 2	
		В	SE	OR	В	SE	OR
처벌불원의사	있음	-2.480*	1.059	.084	-1.241**	.417	.289
전과여부_형사처벌	있음	.705	.927	2.024	.848*	.373	2.335
경합범_이종	해당	3.259**	1.040	26.031	1.221**	.462	3.390
적용법조	처벌법	2.932**	.969	18.756	1.458	1.161	4.299
피해지속여부	지속	1.947*	.877	7.009	.456	.379	1.578
단독양육	해당	.011	.818	1.011	.816	.624	2.262
피고인장애및어려 움	해당	.583	.724	1.792	.553	.408	1.739
피해자장애및어려 움	해당	2.163*	.863	8.699	.357	.556	1.428
피해자연령	1세이상	223	.916	.800	772	.653	.462
혼인형태	법률혼	1.984	1.101	7.271	.764	.507	2.148
	동거,미혼	2.913*	1.184	18.417	1.661*	.658	5.266
자녀수	2명	926	.812	.396	.792	.420	2.208
~1~11	3명이상	-2.373	1.512	.093	150	.915	.860
경제적어려움	해당	112	.746	.894	738	.777	.478
아내학대여부	해당	1.773	1.542	5.886	672	.438	.511
상수	상수		1.715	.002	-1.850*	.868	.157
-2Log Like	lihood	71.069			196.915		
Nagelkerke	e R ²	.540			.354		
Hosmer & Lem	eshow χ ²	7.	431(p=.491	.)	12	.019(p=.15	0)

*p<.05, **p<.01, ***p<.001

먼저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처벌불원의사와 이종경합여부 변수는 피고인 성별과 상관없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효과값을 비교하면 그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 피고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처벌 불원의사의 양형 영향력에서 왜 이러한 성차가 발생하는지는 추가적

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종경합 여부 역시 여성 피고인에게서 양형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약 3배 정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범죄의 경합 여부가 남성보다 여성 범죄자의 양형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Doerner & Demuth, 2014)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즉 전과여부 변수는 독립변수와 함께 분석 했을 때 남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여성보다 남성의 실형 선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선 행연구(Hanrath & Font, 2020)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반대로 적용 법조와 피해지속여부 변수는 여성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만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 피고인은 아동학대처 벌법이 적용된 경우가 2.6%로 대다수의 범행이 아동복지법을 기준으 로 처벌되는 반면, 여성 피고인은 16.1%가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처벌되고 있어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낼 정도로 법조 적용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피해지속여부 변수는 통제변 수에 대한 교차분석을 진행한 [표 5]에서 피고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해당 변수가 여성 피고 인의 양형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피해자장애여부 변 수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주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독립변수인 자녀 돌봄의 조건이 징역형 선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피해자장애여부 변수는여성 피고인의 양형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장애여부는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는데(박명숙, 2002; 김성천·김솔아, 2015; 박정민·정훈영, 2017; 황정미, 2018), 해당 요인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유의하게 고려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해당 변수의영향력이 여성 피고인에게만 나타났다는 점은, 장애아동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학대 행위의 높은 비난가능성이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취약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돌봄 상황이양형 참작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거·미혼의 비법률혼 관계에 있음이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거나 명시된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법률혼 바깥

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법적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변수의 효과값이 남성보다 여성 피고인에게 더 크게 나타난 점은, 비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비난가능성이 양형 판단에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들로 제시되어 온 단독양육, 피해 아동연령, 자녀수, 경제적어려움, 아내학대여부 변수들은 양형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어려움 변수 와 단독양육 변수의 경우 피고인의 빈곤 상황 또는 단독 양육 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판결문에 제시된 경우가 비교적 적어 통계분석에서 독 립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 동연령이나 자녀수 변수도 독립적으로 양형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 기보다는, 다른 조건들과 상호작용하여 이질적인 돌봄 상황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각 돌봄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상황이 피고인의 양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3장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아내학대 발생 여부가 여성과 남성 피고인 모두의 양형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부분이다. 아내학 대 사실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지 못하 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정 내 남성중심적 구조와 통제력이 남성 피고인의 범행 심각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 하지 않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피학대 여성이 아동학 대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남편의 통제력과 돌봄 환경의 억압적 구조 등을 여성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 과정에서 적극적으 로 참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법원은 피학 대 여성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더욱 자세하 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4장의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3절 소결

2장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자녀 돌봄의 조건들이 양

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통계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인들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성별에따라 아동학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돌봄 조건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확인했다. 종속변수인 징역형 선고 여부를 보면, 남성 피고인에비해 여성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범죄전력·경합범 여부 등의 법적 양형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여성보다 남성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자녀 돌봄 조건의 양형 영향력을 통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남성 피고인의 경우 돌봄 조건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훈육·분노 표출 등을 이유로 하는 아동학대 행위 양태나 심각성과 같은 법률외적 요인이 양형 판단에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보다 남성 피고인에게서 더 높은 실형 선고율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돌봄 조건 이외의 양형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독립변수인 자녀 돌봄 조건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살펴본 결과, 여성 피고인은 단독 양육, 자녀 장애, 2명 이상의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에서의 높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거·미혼의 비법률혼 관계에 해당하거나, 학대 피해자가 1세 미만의 영아일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률혼 바깥에서 홀로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의 재생산권이 아동학대 발생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자녀 돌봄 조건에 차이가 존재할 때, 그 차이가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판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피해자에게 장애와 같은 취약성이 있거나 여성피고인이 비법률혼 관계에 있음이 법원 판단에서 주요하게 다뤄질때,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혼인형태에서 동거·미혼 변수는 남성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가 여성에게서 더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여성에 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취약한 자녀 양육에서 비롯된 여성의 돌봄 어려움 등이 양형에 충분히 참작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피

고인 성별에 따라 비법률혼 관계가 보이는 영향력의 차이는 법률혼 바깥의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법원 의 판단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를 제기한다. 이렇듯 양형의 성 차에 미치는 자녀 돌봄 조건의 영향력에서 나타난 차이를 통해 제기 된 쟁점을 중심으로 4장의 내용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 피고인의 아내학대 사실이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학대 사실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지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의 중첩 상황에 전제된 가정 내 남성중심적 구조와 통제기제가 아동학대에 대한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다뤄지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며,이 역시도 4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장애, 빈곤, 혼인 관계와 같은 각각의 조건들이 서로 결합하여 양육 어려움이나 재생산권 실현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돌봄 상황을 구성한다고 할 때, 자녀 돌봄 조건의 개별적인 양형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양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상황의 차이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이에 3장을 통해 돌봄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양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제3장 돌봄 상황에 따른 아동학대의 유형화와 그 에 따른 양형 비교

2장에서는 장애아동 양육에서 비롯된 양육 부담과 혼인 형태로 인한 보호자들 간 관계의 차이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단독양육여부, 자녀수, 경제적어려움 변수와 같이 어머니노릇 수행의 주요 조건이자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조건들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변수들은 가정 내 돌봄 환경을 구성하는 조건들로써, 어머니노릇이 단일한 양육 조건의 개별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양한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된 돌봄 상황 안에서 수행된다는특성을 고려하면, 회귀분석에서 요구하는 각 변수들의 독립성 가정을 의심하게 만든다. 즉, 돌봄을 통한 어머니노릇 수행이 아동학대 양형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건들이 상호교차하여 형성하는 자녀 돌봄 상황을 중심으로 양형 결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절 아동학대 유형화: 군집분석

1. 자녀 돌봄 상황에 기반한 학대 유형 분류

총 8가지의 돌봄 조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돌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3개에서 6개까지 집단을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군집별 빈도가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나면서 유형별 돌봄 상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4개의 집단을 도출했다.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별 특성은 아래 [표 11]과 같다.

먼저 전체의 35.8%를 차지하는 1집단은 주로 보호자 쌍방이 함께 양육하는 상황(91.4%)에서 모든 가구가 3인 가족의 형태인 것을 알수 있다. 이때 아내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55.5%로 과반을 차지하며 타 집단에 비해 훨씬 높게 보고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고, 기타 돌봄 부담이나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표 11] 학대 유형화

		_		학대	유형			
구분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전체	χ^2
	비해당	빈도	117	35	59	86	297	
단독양육	미애당	(퍼센트)	(91.4)	(66.0)	(72.8)	(89.6)	(83.0)	00.045***
(n=358)	ا جا	빈도	11	18	22	10	61	- 26.045***
	해당	(퍼센트)	(8.6)	(34.0)	(27.2)	(10.4)	(17.0)	
-11-1	비해당	빈도	62	37	46	29	174	
피고인장애 및어려움	미애당	(퍼센트)	(48.4)	(69.8)	(56.8)	(30.2)	(48.6)	04.701***
덫역터늄 (n=358)	عادا. عادا.	빈도	66	16	35	67	183	- 24.721***
(11-556)	해당	(퍼센트)	(51.6)	(30.2)	(43.2)	(69.8)	(51.4)	
	મોસીનો.	빈도	111	49	73	65	298	
피해자장애 및어려움	비해당	(퍼센트)	(86.7)	(92.5)	(90.1)	(67.7)	(83.2)	00.000***
(n=358) 해당	عارا. عارا.	빈도	17	4	8	31	60	- 23.686***
(11-330)	애당	(퍼센트)	(13.3)	(7.5)	(9.9)	(32.3)	(16.8)	
	1 ਮੀਜ਼ੀਜ਼ੀ	빈도	7	25	8	8	48	
피해자연령	1세미만	(퍼센트)	(5.5)	(47.2)	(9.9)	(8.3)	(13.4)	21 000***
(n=358)	1세이상	빈도	121	28	73	88	310	- 61.983***
		(퍼센트)	(94.5)	(52.8)	(90.1)	(91.7)	(86.6)	
	-131	빈도	0	0	81	7	88	- 481.195*** -
혼인형태	미상	(퍼센트)	(0.0)	(0.0)	(100.0)	(8.0)	(24.6)	
	미르소	빈도	120	12	0	79	211	
(n=358)	법률혼	(퍼센트)	(93.8)	(22.6)	(0.0)	(82.3)	(58.9)	
	동거,	빈도	8	41	0	10	59	
	미혼	(퍼센트)	(6.3)	(77.4)	(0.0)	(10.4)	(16.5)	
	1 773	빈도	128	49	61	0	238	-
	1명	(퍼센트)	(100.0)	(92.5)	(75.3)	(0.0)	(66.5)	
자녀수	ord	빈도	0	4	20	71	95	-
(n=358)	2명	(퍼센트)	(0.0)	(7.5)	(24.7)	(74.0)	(26.5)	282.639***
	ordalal	빈도	0	0	0	25	25	-
	3명이상	(퍼센트)	(0.0)	(0.0)	(0.0)	(26.0)	(7.0)	
	പലല	빈도	127	28	72	80	307	
경제적	비해당	(퍼센트)	(99.2)	(52.8)	(88.9)	(83.3)	(85.8)	25 10 2555
어려움 (n=250)	-1)1	빈도	1	25	9	16	51	67.136***
(n=358)	해당	(퍼센트)	(0.8)	(47.2)	(11.1)	(16.7)	(14.2)	
) -:))	빈도	57	51	80	72	250	
아내학대	비해당	(퍼센트)	(44.5)	(96.2)	(98.8)	(75.0)	(72.6)	
여부 (~-250)	-1)1	빈도	71	2	1	24	98	93.778***
(n=358)	해당	(퍼센트)	(55.5)	(3.8)	(1.2)	(25.0)	(27.4)	
		빈도	128	53	81	96	358	
전체		(퍼센트)	35.8	14.8	22.6	26.8	(100.0)	_

전체의 14.8%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2집단은 보호자가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며, 피해자가 1세 미만인 경우(47.2%) 역시 다른 집단이나평균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의 혼인 형태는 동거·미혼인 경우가 약 77%로 다른 집단에서 법률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47.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집단의 경우, 단독양육자와 비법률혼의 비율이 높고, 피해 아동이 주로 영아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이라는 점이 주요 특징임을 고려할 때 영아유기 및 출산과 연관된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가 학대의 주요 특징으로 보인다.

3집단은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단독양육인 경우가 27.2%로 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절대 비율은 낮으며 양육 부담이나 빈곤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혼인형태 미상인 경우가 100%인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판결문에 피고인의 혼인형태가 명시 되지 않았거나 코딩을 하기 위한 정보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의미한 다. 주로 단독 피고인의 범행인 경우 혼인형태를 명시하지 않기도 하고,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혼인 관계 를 비롯한 돌봄 관련 변수가 아니라 이외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돌봄 맥락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형태에서 집단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하는 4집단은 피고인(69.8%)과 피해자(32.3%)가 장애 및 행동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4집단에 해당하는 모든 피고인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유일하게 4집단에서만 보고된다. 피고 본인의 장애나 아동의 장애와 함께 다수의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은 아동 양육의 부담을 야기하는 주요인인데,특히 돌봄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장애로 인한 취약성이 두드러진다는특징을 보인다.

2. 유형별 가정 내 양육 상황 비교

유형화를 통해 분류된 각 집단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별과 가정 내 양육상황을 집단별로 비교·분석하고, 그 특 징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집단을 명명했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2]에 제시했다.

[표 12] 유형별 특성

					H유형			
구분			남성통제형	재생산 어려움형	기타훈육형	장애취약형	전체	χ^2
	여성	빈도	27	35	37	37	136	
피고인성별	978	(퍼센트)	(21.1)	(66.0)	(45.7)	(38.5)	(38.0)	25.05.0***
(n=358)	남성	빈도	101	18	44	59	222	- 35.256***
	πő	(퍼센트)	(78.9)	(34.0)	(54.3)	(61.5)	(62.0)	
(11-556)	친부모공동	빈도	73	11	8	43	135	
	신구도하당	(퍼센트)	(57.0)	(20.8)	(9.9)	(44.8)	(37.7)	
	기치보다라도	빈도	22	19	26	14	81	-
	선구도인국 	(퍼센트)	(17.2)	(35.8)	(32.1)	(14.6)	(22.6)	- 166.428***
	친부모와	빈도	24	22	1	31	78	- 100.428
	이성애상대	(퍼센트)	(18.8)	(41.5)	(1.2)	(32.3)	(21.8)	
	기타	빈도	9	1	46	8	64	
		(퍼센트)	(7.0)	(1.9)	(56.8)	(8.3)	(17.9)	
	비동거	빈도	11	0	2	6	19	-
	미당기	(퍼센트)	(9.2)	(0.0)	(3.1)	(7.1)	(6.0)	
	1년이하	빈도	17	35	11	16	79	
		(퍼센트)	(14.2)	(71.4)	(16.9)	(19.0)	(24.8)	
피가해자	=14.151	빈도	29	8	3	19	59	
동거기간 (n=318)	5년이하	(퍼센트)	(24.2)	(16.3)	(4.6)	(22.6)	(18.6)	93.168***
(II-510)	101441-1	빈도	29	5	17	14	65	-
	10년이하	(퍼센트)	(24.2)	(10.2)	(26.2)	(16.7)	(20.4)	
	101127	빈도	34	1	32	29	96	_
	10년초과	(퍼센트)	(28.3)	(2.0)	(49.2)	(34.5)	(30.2)	
	ો ગોનો	빈도	125	38	81	89	333	
원치않는	비해당	(퍼센트)	(97.7)	(71.7)	(100.0)	(92.7)	(93.0)	
임신및출산		빈도	3	15	0	7	25	47.420***
(n=358)	해당	(퍼센트)	(2.3)	(28.3)	(0.0)	(7.3)	(7.0)	
7나 귀		빈도	128	53	81	96	358	_
전체		(퍼센트)	35.8	14.8	22.6	26.8	(100.0)	

먼저 유형별 가해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1집단의 경우 남성 피고인 (78.9%)이 여성 피고인(21.1%)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집단은 과반의 경우에 아내학대가 발생한 특징을 보

였는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이 주로 남성에 의한 아내학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1 집단에서 남성 가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집단 은 1집단과 달리 여성 피고인의 비율(66.0%)이 남성 피고인(34.0%) 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앞서 2집단의 특성이 단독양육과 비법률혼, 영아인 피해자와 경제적 빈곤이었음을 고려하면, 해당 유형은 주로 미혼 여성의 영아 학대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집단에 서는 피고인이 남성인 경우(54.3%)가 여성인 경우(45.7%)보다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전체 피고인 성비(여성 34%, 남성 66%)와 비교하 면 해당 집단에서 여성 피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3집단에서 단독양육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 평 균에 비해 약간 높게 보고된 것과 상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이 남성 한부모가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배호중 외, 2022), 2021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가족유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보건복지 부, 2022) 모자가정(12.3%)이 부자가정(9.9%)보다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집단은 전체 피고인의 성비와 비슷하게 남성 61.5%, 여 성 38.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호자구성형태, 피·가해자 동거 기간, 원치 않는 임·출산 변수를 통해 가정 내 양육 상황을 유형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집단에서는 친부모 공동양육인 경우가 57.0%로 타 집단이나 평균과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고, 피-가해자가 5년 이상 동거 관계를 유지해온 비율이 52.5%로 가족이 비교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집단에서 과반의 경우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첩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의 혼인형태에서 약 94%가 법률혼이었던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들이피해 아동에게 친부모이고 부부간 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는맥락이 아내학대 혹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어려움으로 이어져 중첩적인 학대 상황에 놓이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의 돌봄 상황과 아동학대 발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부장적 가족구조 하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남성의 통제적 권력이

학대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1집단을 '남성통제형' 으로 명명했다.

2집단의 경우 친부모 단독(35.8%)이나 친부모 일방과 그 이성애상대(41.5%)가 보호자인 경우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많았는데, 이는 앞서 2집단에서 피고인이 동거·미혼 상황에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피-가해자간 동거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71.4%로 아동과의 관계성이 짧고, 원치 않는 임·출산인 경우 역시 71.7%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2집단은 여성 양육자의영아에 대한 학대를 그 특징으로 하는데, 원치 않은 임신 및 출산의높은 비율과 보호자 관계의 불안정성은 여성이 재생산 과정을 온전히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짐작케 하며, 재생산권 실현의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산어려움형'으로 명명했다.

3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보호자구성형태가 기타(56.8%)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인 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집단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당 집단에서 피-가해자 간 동거 기간은 10년을 넘기는 경우가 49.2%로 나타나, 아동학대 발생까지 비교적 장기간의 돌봄이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집단에서는 보호자 관계 및 양육상황의 불안정성, 재생산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3집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행위가 돌봄 환경보다는 가해자의 성격적기질이나 훈육 목적과 같은 기타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집단을 '기타훈육형'으로 명명했다.

4집단 역시 피-가해자의 동거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재생산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친부모 일방과 그 이성애상대로 보호자가 구성된 경우(32.3%)가 재생산어려움형 다음으로 많아, 새롭게 구성된 가족 형태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있다. 앞서 피고인 본인 또는 피해자에게 장애 및 행동어려움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었다는 4집단의 특성을 상기하면, 보호자 간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교차하면서 양육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4집

단은 '장애취약형'으로 명명했다.

2절 징역형 선고 여부의 유형별 결정요인

이처럼 자녀 돌봄의 조건들이 상호적으로 구성한 돌봄 상황에 따라 분류된 아동학대 유형이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변수에 대한 유형별 비교

가) 징역형 선고 여부

종속변수인 징역형 선고 여부에서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표 13]과 같이 교차분석을 진행했다.

[표 13] 유형별 징역형 선고 여부 교차분석

				학디		- চানা	χ^2	
구분 			남성통제형	재생산 어려움형	기타훈육형	장애취약형		전체
	집행유예	빈도	64	26	55	42	187	11 401**
징역형	७७७७	(퍼센트)	(62.7)	(56.5)	(79.7)	(54.5)	(63.6)	
(n=294) 실형	시원	빈도	38	20	14	35	107	- 11.491**
	⁷	(퍼센트)	(37.3)	(43.5)	(20.3)	(45.5)	(36.4)	

** p<.01

학대유형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는데, 기타훈육형과 비교하면 다른 세 유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고인의 돌봄 상황에서 발생한 어려움이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취약형에서 실형 선고율(45.5%)이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피고 본인 또는 피해 아동의 장애, 다자녀 양육의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취약한 양육 상황이양형 판단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피해자장애여부 변수가 여성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2장의 분석 결과를 상기하면, 피해 아동의 장 애로 인한 학대심각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해당 집단의 높은 실형 선고 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재생산어려움형에서도 실형 선고율(43.5%)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집단은 영아인 피해자와 동거·미혼상태의 단독양육자인 여성 피고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재생산 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여성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앞선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동거·미혼관계에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었으므로, 재생산어려움형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피고인(77.4%)이 비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점이 높은 실형 선고율과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형 결정에는 학대유형에 따른 돌봄 상황 이외에도 처벌불 원의사 등 기타 양형 인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애취약형과 재생산어려움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높은 실형 선고율 을 온전히 어머니노릇 수행과 돌봄 상황의 영향력으로만 해석하지 않 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성통제형의 경우에는, 기타훈육형 보다는 실형 선고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두 집단이나 평균과 비교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선고율(62.7%)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학대 발생사실이 남성 피고인의 범행 심각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장에서 아내학대여부 변수가 여성과 남성 피고인 모두의 양형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통제형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는 아내학대 사실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나) 양형 요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역형 선고 여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곧바로 집단별 돌봄 상황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다. 범죄 특성 등 기타 요인이 양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대유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기타 양형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러 연구(이세원, 2017; 김수정, 2020; 박연주·한창근, 2020; Doerner & Demuth, 2014)를 통해 아동학대를 비롯한 범죄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어 온 처벌불원의사, 전과여부, 경합범여부, 적용법조, 피해지속여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했다.

학대유형별로 통제변수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4]에 제시했다.

[표 14] 유형별 양형 요인 비교

구분 	н	 L	L기트게원	재생산			전체	
	н		남성통제형	어려움형	기타훈육형	장애취약형	신세	χ²
없-	o	빈도	85	44	57	72	258	
전 천벌불원의사	· - (퍼	센트)	(66.4)	(83.0)	(70.4)	(75.0)	(72.1)	F 799
(n=358)	ų ا	빈도	43	9	24	24	100	5.722
있-	· - (퍼	센트)	(33.6)	(17.0)	(29.6)	(25.0)	(27.9)	
- A	o 년	빈도	80	42	48	67	237	
전과여부_ ^{없-} 형사처벌 —	(퍼센트	센트)	(62.5)	(79.2)	(59.3)	(69.8)	(66.2)	7 110
영사제월 — (n=358) 있	· 년	빈도	48	11	33	29	121	7.112
X.	(퍼	센트)	(37.5)	(20.8)	(40.7)	(30.2)	(33.8)	
ചിം	 해당	빈도	46	36	48	51	181	- 20.047***
경합범_이종	예정 (퍼	센트)	(35.9)	(67.9)	(59.3)	(53.1)	(50.6)	
(n=358) 해¹	디	빈도	82	17	33	45	177	
off.	(퍼	센트)	(64.1)	(32.1)	(40.7)	(46.9)	(49.4)	
b ·	기법	빈도	126	37	80	82	325	
작용법조 작용법조	·시립 (퍼	센트)	(98.4)	(69.8)	(98.8)	(85.4)	(90.8)	4.000***
(n=358)	번법	빈도	2	16	1	14	33	46.289***
^1·		센트)	(1.6)	(30.2)	(1.2)	(14.6)	(9.2)	
o):	티	빈도	69	26	28	23	146	
피해지속여부	회성 (퍼	센트)	(53.9)	(49.1)	(34.6)	(24.5)	(41.0)	00.040***
(n=356)	ا ک	빈도	59	27	53	71	210	22.240***
지]=	독 (퍼	센트)	(46.1)	(50.9)	(65.4)	(75.5)	(59.0)	
r) -1)	ų	빈도	128	53	81	96	358	
전체 ***x< 001	(正)	센트)	35.8	14.8	22.6	26.8	(100.0)	

남성통제형을 먼저 보면,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동시발생한 경우 가 다수인 유형 특성상 피고인이 경합범인 경우(64.1%)가 다른 집단 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37.5%) 역 시 비교적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있거나 경합범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진다(이민식, 2005; Doerner & Demuth, 2014)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남성통제형에 해당하 는 피고인은 다른 집단의 피고인에 비해 경합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형에서 처벌불원의사 있는 경우가 33.6%로 비교적 많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지속된 경우는 46.1%로 가장 낮다는 특성이 처벌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표하는 피해자 측 인물은 피해 아 동 당사자이거나 아동의 또 다른 보호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통 제형에서 나타나는 처벌불원의사의 주체는 아내학대 피해자이면서 아 동의 보호자인 여성이거나 아동학대 피해자 본인인 자녀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학대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가장인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써 형성해 온 친밀성이나 경제 적 의존관계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이 처벌불원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정혜, 2009). 그러나 특히 이 유형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많이 표출되는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재생산어려움형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는 20.8%이고, 이종경합에 해당하는 경우도 32.1%로 4개의 집단 중에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에서 실형 선고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적은 비율(17.0%)의 처벌불원의사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처벌불원의사는 2장에서 여성과 남성 피고인모두의 양형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다른 집단에 비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적어 양형에 참작되지 못한 것이 실형 선고율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단독양육자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많았는데, 이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피해자 측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처벌불원의사가 나타난 경우가 유독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생산어려움형은 처벌 수준이 높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경우가 4개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30.2%)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1세 미만의 영아에 대

한 학대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유형 특성상, 피해자의 취약성이 학대 피해 결과의 심각성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경우가 많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타훈육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29.6%)가 아내학대중첩형 다음으로 많고 이종경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9.3%)가 많으며, 1건을 제외하고 전부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기때문에 범행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취약형은 학대 피해가 지속된 경우가 75.5%로 4개 집단 중에 가장 많았다. 피고인 본인 또는 피해자의 장애와 가정의 빈곤 상황 등은 돌봄 상황에 물리적이고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아동학대의 지속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집단의 높은 실형 선고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비율(14.6%)이 비교적 높은 점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범행 및 피해 특성과 관련된 양형 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에 미칠 영향력을 회귀분석 과정에서 통제함으로써, 학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돌봄 상황의 특성이 징역형 선고 여 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2. 징역형 선고 여부의 결정요인

이제 자녀 돌봄 상황의 차이가 징역형 선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피고인을 대상으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 15]에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본 모형은 징역형 선고에 대한 영향력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Hosmer & Lemeshow $\chi^2=12.690$, p >.05), 모형은 32.9%(Nagelkerke R^2)의 설명력을 보였다.

먼저 통제변수의 영향력만을 확인한 model 1에서는 모든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고인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할 때, 모든 통제변수가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2장의 회귀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model 2에서는 자녀 돌봄 상황을 기준으로 분류한 아동학대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대유형 변수 투입과정에서 더미변수 해석의 명료화를 위해 기

타훈육형을 참조변수로 설정했다. 기타훈육형은 돌봄 환경에 따른 어머니노릇 수행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돌봄 맥락이 양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기에용이하다고 판단했다.

[표 15] 학대유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7	5G역형 선고·	여부 (N=294)		
1	변수		Model 1		Model 2			
		В	SE	OR	В	SE	OR	
처벌불원의사	있음	-1.537***	.343	.215	-1.502***	.349	.223	
전과여부	0) 0	C20*	20.4	1 000	770*	200	0.100	
_형사처벌	있음	.638*	.294	1.892	.770*	.306	2.160	
경합범_이종	해당	1.867***	.333	6.468	1.842***	.346	6.310	
적용법조	처벌법	2.092***	.480	8.099	1.784***	.505	5.954	
피해지속여부	지속	.713*	.298	2.040	.736*	.313	2.087	
	남성통제형				.654	.414	1.924	
학대유형	재생산어려움형				1.074*	.511	2.926	
	장애취약형				1.076*	.431	2.932	
	상수	-2.188***	.372	.112	-2.917***	.505	.054	
-2Log	-2Log Likelihood		312.251			304.841		
Nagel	kerke R ²	.302			.329			
Hosmer &	Lemeshow χ ²	8.2	292(p=.405	5)	12.	.690(p=.123	(1)	

^{*}p<.05, **p<.01, ***p<.001

남성통제형을 제외한 재생산어려움형과 장애취약형에서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가 재생산어려움형이나 장애취약형에 해당할 경우 집행 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증가했다. 재생산어려움형에서 피고인이 동거·미혼의 관계에 있음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경우가약 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비법률혼 관계에 있음이 법원 판단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경우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2장의 분석 결과를통해 재생산어려움 유형이 징역형 선고 여부에 정적(+) 영향력을 보이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혼 바깥에서 자녀를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행위로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실형 선고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외에도, 단독양육과 빈곤 상황이 원치 않은 임·출산과 교차하여 만들어내는 재생산권 실현의 어려움이 피고인, 특히 여성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취약형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결과는 피고인 본인 또는 피해자의 장애와 다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장애취약형의 돌봄 취약성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장에서 피해자의 장애 변수가 여성 피고인의 실형선고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취약성이 양형 결정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됨에 따라 장애취약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피고인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양육상황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판단의 과정을 면밀하게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처럼 여성이 재생산 어려움과 장애로 인한 취약한 돌봄 상황에 노출된 상황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4장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남성통제형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학대 발생 여부가 남성 피고인의 양형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2장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며,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첩 발생 상황에서 드러나는 남성의 통제기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판단 과정에 주요하게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돌봄 상황과 아동학대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아내학대 상황이 처벌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4장의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절 소결

3장에서는 자녀 돌봄의 조건들이 상호적으로 형성하는 돌봄 상황이 아동학대 피고인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돌봄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2장을 통해 주요 쟁점으로 드러난 장애와 빈곤 등의 교차에서 비롯된 양육 어려움, 아내학대와의 중첩, 재생산어려움의 돌봄 상황을 잘 드러내면서도 각 집단의 빈도가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난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남성통제형은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가 중첩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과반에 해당하는 것이 집단의 주요 특 징이었으며, 남성 피고인이 약 8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이 집단은 친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며 법률혼 안에서 비교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관계의 지속성이 남성의 통제하에서도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아동학대 와의 중첩적인 상황에 이른 요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로 재생산어려움형은 비법률혼 관계에 있는 단독양육자인 여성에 의 한 1세 미만의 영아 학대를 주요 특징으로 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해 당하는 경우가 4개 집단 중 가장 많았다. 양육 상황에서는 피-가해 자간 동거 기간이 1년 이하로 매우 짧고 원치 않은 임·출산에 해당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집단 특징은 주로 미혼인 여성이 재생산 과정을 통제하기 힘든 환경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부터 아동 학대 상황이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셋째로 기타훈육형 은 돌봄 상황과 관련된 어려움이 두드러지지 않아, 가해자의 성격적 기질이나 훈육 등 기타 요인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취약형은 피고 본인과 피해 아동의 장애 및 행동어려움이 높게 보고되며, 모든 피고인이 2명 이 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장애취약형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는 장 애와 빈곤으로 인한 돌봄의 취약성과 양육 부담이 교차하면서 심화된 양육 어려움에 의해 주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학대 유형별 징역형 선고 여부의 차이를 비교하고, 양형 결정에 돌봄 상황이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형 선고율은 장애취약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생산어려움형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실형 선고율이 보고되었다. 기타훈육형과 비교할 때, 남성통제형을 포함한 3개 집단 모두 비교적 높은 실형 선고율을 나타냈다는 점은 피고인의 자녀 돌봄 상황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고려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4장을 통해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이처럼 징역형 선고 여부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차이에 자녀 돌봄 상황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재생산어려움형 또는 장애취약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와 빈곤 등이 교차하여 야기하는 양육 부담과 임신·출산· 양육 전반의 재생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같은 돌봄 상황의 취약성이 피고인의 학대 사실에 대한 양형 결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 증가에 피해 아동의 장애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2장의 분석 결과와 재생산어려움형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피고인이 여성(66%)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아동 양육 및 재생산권 실현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돌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통제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과 높은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내학대 상황 및 중첩 학대 발생이 드러내는 가정 내남성중심적 구조와 통제기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에 4장에서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아내학대 상황, 돌봄어려움, 재생산 관련 상황이 다뤄지는 방식을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젠더 인식

통계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에 있어서 자녀 돌봄 상황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했으며, 이때 여성 피고인의 어머니노릇 수행에 관한 법적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장에서는 2-3장에서 도출된 쟁점적 돌봄 상황이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모성이데올로기의 작용을 살펴본다.

1절 아내학대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학대

앞선 통계분석을 통해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첩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남성중심적 구조와 통제 상황, 그 과정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어머니노릇이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내학대는 아동학대와 동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높다는 점에서, 가정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 경험이 모성수행과 중첩된다(박언주, 2014)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성애 관계의 남성중심적 구조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전반적인 통제와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엄마로서 피학대 여성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판단을 제기한다. 이에 아내학대 사실이 아동학대 행위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1. 아내학대 사실의 불인지

여성과 남성의 권력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된 가부장적 지배 관계는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통제하에 놓이게 만든다(Belknap, 2009[2007]). 여러 연구는 아내학대를 비롯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정혜숙, 2009; 허민숙, 2012; 박미랑, 2013; 신나래·박언

주, 2019). 아내학대 상황은 가정 내 남성중심적 관계 구조를 입증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남성의 통제력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은 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음에도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와 책임을 지는데, 남편의 통제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보호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생한 아동학대행위에 대해 여성을 가해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학대 여성에게 작용하는 남성의 통제기제에 주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책임이 인정되어 친부모가 공동으로 기소된 사건¹⁹⁾에서, 여성인 피고인 B는 남편(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을 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는데도 말리거나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아동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받았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 간의 관계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혼인 전 피고인 B의 복잡한 이성관계를 문제 삼고 <u>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것을 의심</u>하면서 C(첫째 자녀)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고, 2020. 6.경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퀵 서비스 아르바이트의 동료였던 남성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자신이 귀가하면서 발견하자 피고인 B이 위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임신하였다고 의심하고 <u>피고인 B에게 피해자도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u> 의심을 표출하면서 C과 피해자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성이 남편에 의한 성적 통제와 끊임없는 의심속에서 생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약 1년간 서로 간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가정불화가 이어져 왔다"는 인정된 사실과 교차해보면 여성이 폭력 피해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에게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성적 정절에 대한 의심 및 폭력이 중첩된 통제적 환경에 놓인 여성이 자녀 양육과보호를 수행하는데 겪었을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

법원은 여성의 아동학대 가해행위에 미친 불평등한 관계 구조와 남성의 통제 행위를 참작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불화'로 축소하여 이 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피학대 여성을 아동학대행위자로 위치

^{19) 2021.8.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58

시키는 남성의 통제기제를 고려하지 않는 법적 판단은,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오가는 여성의 삶의 맥락을 간과하고 '나쁜 엄마'로 호명하면서 자녀 보호에 대한 여성의 책임성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한다. 아내학대 피해에 노출된 여성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인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자녀 보호에 실패한 어머니로서 여성을 평가하는 양상의 차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내학대는 이성에 관계의 가부장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된 상황이며, 가정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맺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는 아동학대 발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체적 피해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부모의 폭력 상황을 목격한 아동의 피해를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부부간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스트레스 경험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조미숙, 1999; 김정란, 2003; 김형모·김영민, 2007; 장덕희, 2010; 정윤경 외, 2012; 이세원, 2020),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2021년 12월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내학대 사실이 정서적 학대로만 문제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에게 계부인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²⁰⁾에서,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욕설을 아동이 목격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직접 신변 비관을 암시하는 식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사실 중 일부는 "D(아내)이 청소를 소홀히 한다며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아동이듣고 있음에도 D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7층에서 던져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현관 앞으로 나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의 아내학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부부싸움'으로 사소화하여 제시한다.

^{20) 2021.6.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23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아동의 모(母)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발생한 행위이다."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욕설과 협박 행위를 단지 부부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여성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아내학대의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에는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신체적 폭행이 있는 경우만을 아내학대 상황으로 국한하여 이해하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벨크냅(2009[2007])은 잔혹한 폭력 피해의 이미지에 익숙해진 아내학대의 전형이 아내학대를 사소화하고 묵인하려는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위 사례에서 언어폭력과 위력을 매개로발생하는 공격적 행위를 아내학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판단을 통해 아내학대 상황에 대한 남성중심적 관점을 수용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내학대행위를 사소화하여 좁게 인정하는 법적 판단은 다음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 아동의 계부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내(B)에 대한 폭행, 주거침입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²¹⁾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내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한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의율하지 않고, 아동이 입은 피해에만 주목하였다.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B의 모친이 피고인과 B가 동거하는 집에 와서 생활하기 시작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u>피해자, B 및 B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u> 그곳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휘두르며 "난도질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나는 포기상태니까 진짜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아내를 비롯한 장모와 자녀에게 욕설과 협박을 통해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한 사실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이후 양형 설시 부분에서 부부간의 '반복적인 다툼' 정도로 사소화하여 제시된다. 해당 사실 이후 피고인은 아내인 피

^{21) 2019.10.15.} 선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고단123

해자 B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폭행 범죄가 병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결정을 받 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법원뿐만 아니라 입건 단계부터 남성이 아내에게 가한 신체적 폭행 사실만이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고 있으 며, 여성에게 가해진 '경미한' 수준의 학대 사실은 아동의 학대 피해 에 흡수되어 비가시화되었다.

다음 사례에서는 아내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격한 자녀에 대한 정서학대 행위로만 기소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아동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자녀들 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사건²²⁾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된 범행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중략)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들을 억지로 잠에서 깨우고, 이를 저지하는 친모 E에게 '씨발년아', '답답한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u>욕설을 하며</u> 피해자들이 깨어 있는 가운데 <u>위 E의 턱 부위를 손등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u>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에 대한 정서적 위해 행동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행이 함께 발생했지만, 별도의 아내학대 행위로 입건 및 기소되지 않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처럼 아내학대 맥락들이 자 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만 인정되는 상황들은, 아내학대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법원의 판단 단계를 비롯 해 수사와 법적 기소 절차 전반에 깔려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위 사례들을 통해 법원이 아동학대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를 가시적이고 잔혹한 폭력 상황에만 국한하여 인정하는 남성중심적 관점이 드러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과 아동에게 가하는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폭력의 맥락을 누락한 채 아내학대 행위를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실로만 기소하는 검찰 관행은, 아동의 피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학대 피해를 가려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아내학대 행위를 아동학대 사실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법원의 판단은 가정폭력을 수반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질의 심각성 등을 남성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결과

^{22) 2021.5.12.} 선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합2

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피학대 여성의 보호능력 판단

아내학대에 노출된 여성은 폭력 피해 경험 그 자체로 자녀 양육에는 부족하고 부적절한 어머니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박언주, 2014). 즉,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인 여성들은 피해자비난과 모성비난의 이중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정혜숙, 2009). 한편 폭력 피해 여성을 자녀보호에 실패한 부적절한 어머니로 규정하지 않고 자녀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성공한 어머니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Haight et al, 2007). 그러나 일련의 논의들은 여전히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로 여성을 이분화하여 모성 경험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전략을 벗어나지 못하며이를 통해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모성이데올로기가 강화된다고 지적된다(박언주, 2014). 이와 같은 모성이데올로기는 아내학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아동학대행위자라는 특성을 지닌 여성의 어머니노릇 실패를 규정하는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판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분화된 어머니상을 분석하였다.

가) 보호력을 잃은 무기력한 어머니

어머니로서 여성은 일차적으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 요청된다. 이때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여성은 어머니노릇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내학대의 피해로 온전한 양육을하기 어려웠음이 인정된 여성들은 어머니노릇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로 간주되어 온정적으로 참작된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비춰지는 여성들은 전형적인 피해자 담론에 의해 보호의 대상으로다뤄진다.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을 살펴보면, 여성이 처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자녀 보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하여 보호책임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담론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아동들의 친모인 여성이 남편(G)의 상습아동학대에 대한 방

임 및 공모, 치사죄로 기소된 사건²³⁾은, 아내학대 피해자인 여성이 어떻게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원은 학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지 못한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 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학대 피해로 인한 여성의 수동적이고 무력한 태도를 양형에 적극 참작했다.

"피고인은 친모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 곤궁함이나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책임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중략) 피고인은 … G를 몇 차례 소극적으로만류한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친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이에 <u>G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그의 폭력과 아동학대를 감내하려다가</u>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3. 4. <u>G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1년의 접근금지 이후에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G의 폭력적 성향과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u>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고 있으나, 동시에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가정폭력과 그에 대한 법적 조치의 미흡함을 경험하면서 느꼈을 좌절감과 지속적인 감시에 의한 무력감 등을 온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법원은 학대 피해자인 여성의 무력감과 스트레스가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양형에도 반영되는데, 아동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7년 2월)에서 하한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한다.

^{23) 2020.7.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65. 이 사건에서 여성은 남편(G)의 학대에 사용된 목검을 가져다주거나 피해아동이 감금된 상태를 방임하고, 남편이 외출한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사실과 구급대원 출동 당시에도 학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피학대 여성이 전형적인 피해자상과 일치할 때 그 책임을 일부 경감하는 재판부의 태도는, 친모인 피고인(C)이 딸에 대한 남편과 아들의 성폭력 범죄를 방임한 행위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건²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피고인 A)와큰 아들(피고인 B)은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속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딸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했음에도 가해자와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을 방임했다. 법원은 어머니로서 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방기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이 추가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어머니노릇의 실패로 규정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설시를 통해 아내학대 피해자로서 여성의 상황을 참작한다.

"피고인 C도 가족 구성원들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u>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u> 자신의 의견이 가정 내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해 온 점"

법원은 여성 피고인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²⁵⁾에 노출된 채 생활하는 억압적인 환경에서 본인의 의사조차 제대로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하여, 특별감경인자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채택한다. 남편이 폭력을 통해 피고인인 아내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여성이 어머니로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이 온정적으로 고려되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학대 피해로 인해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여 그 책임을 경감하며, 이는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때 피해자로 인정받는 여성은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행사하기 어려웠던 수동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24) 2021.3.11.}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합50

²⁵⁾ 남편인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아내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별건 동시 기소되었다.

나) 학대의 공모자인 피학대 여성

앞선 사례에서는 피학대 여성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어머니로 바라본 것과 달리, 여성의 학대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학대 행위에 공모한 가해자로 위치 짓는 법원의 판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비난모델은 여성을 아내 혹은 어머니노릇의 실패자로 규정하여 남성의 학대적 반응에 합리성을 제공(정혜숙, 2009)하는데, 이때 여성에게는 학대 피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어머니로 서의 의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천부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한 사실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 사건²⁶⁾에서, 법원은 여성의 아내학대 피해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을 아동학대 가해행위의 공모자로 위치시킨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에 대한 폭력 상황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만 문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때 학대 피해 에 노출된 여성은 공모자로 제시되었다.

"<u>피고인은 J(아내)과 공모하여</u>, 피해자 K이 있는 가운데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등 <u>피해자를 가정폭력에 노출되게 하여</u>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언설은 여성이 학대 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자녀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법원은 -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가정 내 폭력상황을 '부부싸움'으로 사소화하면서 아내학대 피해자인 여성을 한순간에 아동학대 가해 공모자로 전환시킨다. 아내학대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적 수단으로써 발생한다(양현아, 2006a)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의 통제하에 놓인 여성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피고인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쪽뺨을 3~4대 때리고, 몸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물리적 폭력

^{26) 2021.4.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166

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로도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가정폭력처벌법에의한 임시보호명령 처분과 위의 폭행 사실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지속되는 동안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위력 역시도 지속되어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는 남성의지배권력 행사로 인해 여성이 처한 종속적 상황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 오히려 학대 피해 상황에서도 아동을 우선으로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노릇 수행의 실패를 판단한다.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 피해보다는 어머니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은, 여성이 학대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화된다. 피해 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²⁷⁾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아내학대 행위를 아내(B)와 함께 '서로를 폭행'한 사실로인정한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음에도 아내 B과 다투며 위 B을 주먹으로 때리며 발차기를 하고, <u>위 B도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며 발차기를 하는 등 서로 폭행</u>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과 행위로도 동시 기소되었으며, 아내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관계의 맥락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내가 피고인의 폭행에 맞대응하여 때렸다는 이유로 아내학대 사실을 쌍방 폭행으로 축소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피해아동이 있는 가운데 반복하여 처와 서로 폭력을 행사해 온 점"을 피고인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때 자녀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피학대 여성은 아동학대행위에 공모한 '나쁜' 엄마로 명명되는 효과가 야기된다. 위 사례들에서 여성들이 아동학대 피고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남성의 폭력 행위에 순응하지 않고 맞대응을 하는 여성의 행동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점이 중요하다. 이는 여성 본인의 피해와 자녀에 대한 보호 사이에서여성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은 무력하고 순응적인 태

^{27) 2021.4.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24

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동시 발생한 경우, 여성에게는 학대 상황에서도 자녀를 보호할 어머니의 의무 수행이 우선으로 요구되었다. 이와 동시에 여성은 학대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평가되는데, 학대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는 여성과 그로부터 벗어난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 실패는 이질적으로 다뤄졌다. 아내학대의 폭력적상황에 집중하면서 폭력 피해에 무력한 여성의 모습을 부각하여 양형을 참작해주는 식의 법적 판단은 보호받아 마땅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는 '피해자 자격'의 담론(허민숙, 2012)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여성이 처한 돌봄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 보호의일차적 책임이 엄마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피학대 여성에게 어머니노릇 수행의 부담을 강화할 수 있다.

2절 돌봄 어려움의 몰이해

장애와 빈곤, 다자녀 양육 등이 결합한 취약한 돌봄 상황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3장의 분석 결과는 해당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험하는 취약성이 처벌 판단 과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피고인에게 그 영향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자녀의 장애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머니노릇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장애와 빈곤 등이 결합한 취약한 양육 환경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돌봄 어려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1. 아픈 아이에 대한 돌봄과 여성의 이중부담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돌봄 책임에서 온전히 면제된 성인 남성 노동자를 이상적 노동자(ideal worker)로 간주하는 일터의 관행을 유지한 채로 여성의 유급노동참여를 증가시켰다(김미라·배은 경,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가족 내 돌봄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여성에게 부여된 아동 보살핌의 책임은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하며, 이는 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결합하여 여성의 빈곤을 심화한다(김영란, 2006). 이렇듯 높은 부담 감과 빈곤이 맞물려 여성의 돌봄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장애라는 요인이 결합할 때 돌봄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양형 판단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피해 아동들의 친모인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기소된 사건²⁸⁾을 보면, 법원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비롯해 다수의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여성은 장애가 있는 자녀(20세로 아동은 아님)에게 가한 신체적 폭행 및 상해치사 행위와 다른 3명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양형의 이유를 제시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아동 D, E, F를 폭행하여 위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죄의 중함은 굳이 형언할 필요조차 없다."

사망한 피해자 C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지적장에 2급으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 보육시설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피해자 연령상 보육시설에서 더는 생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타 시설 및 병원에 입원시켜 대체 돌봄을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병원 생활을 거부하여 약 2달간 함께 생활하게 되었음이 판결문을 통해 기술되어 있다. 피고인이 감내해야 했던 열악한 돌봄 지원 체계와 부담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재판부는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피고인이 갑작스레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의 돌봄까지 맡게 되면서 받은 양육 스트레스나 장애인에 대한 공적 돌봄 체계의 미비함으로 인한 사정에 대한 참작 없이 자녀 4명에 대한 양육 책임을 온전

^{28) 2020.9.8.} 선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고합6

히 여성 개인에게 돌린다. 이러한 법적 판단에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증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 여성의 부 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장애아동은 일반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존도는 양육자에게 심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박명숙, 2002). 영유아나 중증장애인 등 불가피하게 의존적인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은 상호 성장을 경험하거나 기대하기 힘든 돌봄관계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돌봄 제공자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추지현, 2021). 중증장애인과 같이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은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강화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김성천·김솔아, 2015). 이처럼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부터 비롯되는 돌봄 부담은 여성이 온전한 어머니노릇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위 사건에서는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이 놓인 양육 환경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장애뿐만 아니라 돌봄과 생계부양의 이중부담 속에서 여성의 빈곤 상황은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법원이 빈곤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노릇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수 있다. 피해 아동들의 친모인 피고인이 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사건²⁹⁾에서, 여성은 자녀들의 의무교육을 방임하고 결국 유기 행위까지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별건 사기죄로 병합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찜질방과 모텔 등에서 숙식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u>결국 유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u>, 피해자 H(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지내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자녀들을 유기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

^{29) 2020.9.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979

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추후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으나, 거주지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홀 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사기 행위에 나아 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 놓인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여성이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생계부양과 돌봄 제공의 이중부담을 짊어진 상황을 적극 참작하지 않는 판단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및 방임행위로 기소된 친부에 대한 판결30)과 차이를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남성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약 일주일간 자녀들만 내버려 둔 채 귀가하지 않음으로써 방임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아동학대행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혼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혼자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주고 있다. 남성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이는 앞선 사례에서 여성이 돌봄과 생계부양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노력이나 어려움 등이 범행 사유로 참작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제시된 두 사례의 피고인들 모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돌봄과 생계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부담 속에서 이들이 자녀에 대한 방임에 이르게된 상황을 상이하게 판단했다. 남성의 경제활동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취하기 어려웠음을 참작해주는 사유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이 수행해야 했던 이중부담의 상황은 오히려 아동 보호 실패의 원인으로 여겨졌다. 또한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을 온전히 혼자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에 제약을 겪고, 양극화된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가 빈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구조 차원의 문제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 사례에서는 빈곤과 장애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양육 부담을 심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³¹⁾에서 피해 아동의 친부모인 피고인들은 생후 22개월인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 2021.9.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5

^{31) 2021.6.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8

피고인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20만원의 용돈 및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수당만으로 양육을 지속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약 2년간 위탁 양육을 맡겼으나, 위탁가정의 사정으로 직접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법원은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방기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 이에 피고인 A (남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여성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u>피고인 B까지 실형을 선고</u> <u>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u> 현재 만 4세로서 희귀질환인 나팔꽃증후군을 앓 고 있는 첫째 딸의 양육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해 남편인 피고인 A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언설을 함께 보면, 아 내인 피고인 B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남편과 두 자녀 모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아동수당만으로 양육을 지속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자녀와 위탁 양육을 맡겼던 피해자를 함께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엄마 로서 피고인이 느꼈을 돌봄 부담은 법원의 판단에서 누락되고, 오히 려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책임을 지속시킨다. 장애를 가진 첫째에 대 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위와 같은 법원 의 판단은, 여성이 있어야 할 일차적 장소를 가정으로 규정하면서 돌 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기존 담론을 유지·재생산한다. 또한 여 성을 돌봄의 일차적 주체로 규정하면서도 여성이 양육 과정에서 느꼈 을 스트레스나 돌봄 부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들이 엄마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아동 돌봄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홀로 헤쳐나가는 것이 엄마의 자격이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어머니노릇 수행 상황에서 장애와 빈곤이 맞물려 형성된 여성의 취약성과 양육 어려움이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에서 양형 결정의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여성이 처한 돌봄 상황의 취약성과 구조적 문제보다는 자녀에 대한 보호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으로는 여성 피고인에게 선고형을 완화해주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판단 역시도 돌

봄 환경에서 비롯된 양육 어려움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보다는 여성에게 부여된 돌봄제공자로서의 일차적 책임을 부각하고 지속시키 는 담론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돌봄자의 돌봄의존성

킷테이(2016[1999])는 가족 내 관계에서 의존노동자32)가 돌봄 대상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존노동자 본인이 의존하는 누군가의 지배와 착취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때주로 가정 내 생계부양자인 '조달자'와 의존노동자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력의 불평등이 의존노동자의 2차 의존을 야기함으로써 지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106). 돌봄노동이 여전히 여성의 일로간주 되는 상황(안숙영, 2018)에서, 자녀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남성 생계부양자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여성은 관계에 더욱취약해질 수 있다(킷테이, 2016[1999]). 특히 장애와 같은 질병을앓고 있는 경우 여성은 폭력과 학대, 착취를 비롯한 남성의 통제에더욱 취약해지는데(조은경·강동욱, 2020), 이렇듯 여성이 돌봄 상황에서 2차 의존으로 인해 경험하는 취약성과 양육 어려움이 법적 판단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피해 아동의 사망을 야기한 남편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자녀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받은 여성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³³⁾을 다시 보면, 법원은 남편(피고인 A)이 홀로 생계를 부양하는 빈곤한 가정환경을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범행경위로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u>피고인 A이 홀로 퀵 서비스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u>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아버지를 비롯한 친족들로부터 부정기적으로 30~40만원 정도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곤궁한 생활을 하여 오면서, 결혼을 반대했던 가족들과의 불화와 <u>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하여 가정불</u>화를 겪게 되었고, 2020. 2.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서로 간의 가정폭력 사

³²⁾ 킷테이는 돌봄(caring)을 '의존노동'(depency work)으로 개념화하면서 모성적 실천(m othering)을 의존노동의 전형으로 제시했다. 의존노동자는 의존노동, 즉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아동, 노인과 같은 돌봄 대상자(=의존인)와 의존관계에 놓여있다(82).

^{33) 2021.8.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58

건으로 수십 회에 걸쳐 신고하는 등 가정불화가 이어져 왔다."

해당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의 "복잡한 이성관계를 문제 삼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것을 의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인 통 제를 가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여성이 물리적 폭력 피해와 경제 적 의존으로부터 비롯된 2차 의존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이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남성에게 의 존해온 상황을 범행 경위로 제시하면서도, 그 의존관계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권력과 아동 보호 조치에서 나타난 여성의 미흡한 태도 사 이의 연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 생계부양역할에서 비롯된 남편과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지배적 태도가 여성의 양육 행동에 영 향을 미쳐, 여성이 남편의 아동학대행위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취약한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충분히 참작하 지 않았다. 법원은 선고형의 결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과 같이 여성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취약성만을 적극적으로 참 작할 뿐, 주양육자로서 여성이 처한 통제와 의존 상황을 처벌 판단 과정에서 간과했다.

다음 사례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의 취약성이 남성의 지배적 관계 유지에 이용되는 더욱 가시적인 차원의 종속성이 나타나는데,이러한 관계의 역동은 여성의 학대 행위에 대한 사실인정 과정에서 누락 되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계부와 친모가 공동으로 기소된 사건34)에서, 피고인들은 성관계 장면을피해 아동이 목격하게 하고 결국에는 피해 아동과 셋이서 함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 아동과 친모(피고인 B) 모두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장애로 인한 친모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피고인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 구조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 채여성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고인 B이 어머니로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피고인 B이 거절하였음에도 수차례 다시 동의를 구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B이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나아

^{34) 2020.12.10.} 선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합32

갔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u>피고인 B과 피해자의 경도의 지적장애 상태</u> <u>를 이용하여</u>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위와 같은 언설을 통해서 남성 피고인이 아내의 지적장에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성이 결국은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아동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다. 당시 여성의 '동의'를 진지한 동의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범죄 사실인정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심 밖으로 여겨진다. 위력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김혜정, 2019)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남성과 평소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여성의 동의와 이로 인한 학대 행위 가담을 법적 사실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위의 사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취약성이 야기하는 여성의 돌봄 의존성과 남성에 의한 지배 관계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법원 의 판단 과정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법원 은 남성의 아동학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여성의 취약 한 위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자녀 보호에 실패한 책 임을 물음으로써, 여성을 아동학대의 공모자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은 취약한 자녀 돌봄 상황에서 비롯된 양육 어려움을 간과 하고, 여성의 보호책임과 돌봄 부담을 강화하는 담론을 재생산할 우 려가 있다.

3절 법률혼 바깥에 있는 여성의 어머니노릇

피고인의 혼인 형태가 동거·미혼과 같이 법률혼 바깥의 관계에 있는 경우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법률혼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양

육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여성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에서 더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3장에서도 동거·미혼 관계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아동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재생산 어려움형의 양형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단독 양육과 빈곤 상황이 결합하며 재생산권 실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돌봄 환경에 놓여있을 때 발생한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3절에서는 법률혼 바깥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어머니노릇과 자녀 돌봄 상황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성적 존재로서 어머니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적 정절을 문제 삼는 이중적인 성규범(김혜영, 2013)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해왔다. 특히여성이 어머니인 경우, 성적 정절에 대한 요청은 더욱 강력해진다. 부부 관계에서 여성의 외도(혹은 외도에의 상상)가 아내학대의 가장 강력한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양현아, 2006a)는 점은 어머니로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통제가 법적으로도 수용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족살해 가해자에 대한 양형 요인을 분석한 연구(손지선·이수정, 2007)에서 '부인의 외도'는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부부간의 성적 정절이 사실상 여성에게 요구되며 이러한 통념이 양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아내에 대한 특수 협박으로 기소된 한 사건35)을 보면, 어머니인 여성의 성적 정절을 통제하는 통념이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가정은 자녀가 총 6명으로, 그중 막내인 자녀(H)가아내가 낳은 혼외자임을 알게 된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어 피해 아동과 아내에 대해 욕설과 위협,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아동학대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35) 2020.7.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442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u>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범</u>행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법원은 피고인이 자녀와 아내에 대한 중첩적 학대 가해행위로 나아가게 된 원인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부정행위'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양형 참작에 반영하였다. 여성의 외도가 남성의 범행 경위에 대한참작 사유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어머니로서 여성의 성적 순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통념이 법적 판단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족관계 안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적 순결이 미혼 여성에게는 일상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양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다음의 사례들에서 발견되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이 아동유 기·방읶과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 사건36)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여성이 영아인 자녀를 두고 1시간가량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는 벽과 매트리스 사이에 빠져 사망했다. 이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 와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을 덧붙여 범죄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유기·방임이라는 학대 행위의 특성 상, 피고인이 왜 아동을 두고 외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확 인하는 작업은 법적 판단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이다. 다만 해당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외출 사유에 '술을 곁들인' 식사라는 불필요한 수식을 붙임으로써, 여성이 연인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 동을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미혼 여 성의 일상적 생활을 이성애 관계로 환원하여 바람직한 어머니의 모습 과 대조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법원의 태도는 다음 사례에서 더욱 명 시적으로 드러난다. 자녀를 홀로 출산한 후 양육해오던 미혼 여성인 피고인이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인정되어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사건37)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을 제기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u>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외박을 하고</u> 그 다음날 17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그 다

^{36) 2020.12.1.} 선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159

^{37) 2020.5.7.}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합8

음날 오후에 귀가한 사실이 있다."

법원은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당시 여성이 남자친구와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는 점을 학대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양육과 생업을 병 행하며 피해 아동을 일상적으로 집에 방치하는 생활을 지속해왔음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일상이 반복됨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 아동을 몇 시간 정도는 홀로 두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지니 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 양상이 아동학대치 사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장 기간 반복된 방임행위보다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여성이 연인과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상황에 있었음에 집중한다. 심지어는 아동 학대치사행위 자체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전 생활 양 식까지 가져와 피고인 행동의 높은 비난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사실인정 과정에서 필수적이지 않음에 도 여성의 생활 양식을 기술함으로써, 피고인을 성적 존재인 미혼 여 성으로 표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대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판단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 사례에서는 직업 양식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어머니 자격에 대한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혼 여성인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및 유기·방임 등으로 기소된 한 사건38)에서, 여성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흥주점 직원으로 야간 근무를 병행하면서 영아인 아들을 방치하여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되었다. 이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 비난가능성이 높음을 설시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u>다른 여성들보다 덜 꾸미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u>,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을 외면하고 숨긴 채 직장에서의 평가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동은 <u>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u>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이러한 언설은 "피고인의 수입을 고려할 때 아동들의 보육을 맡길

^{38) 2021.4.29.}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합239

기관이나 인력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장 내 평가에만 집중하며 꾸밈을 위해 돈을 썼다 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인 행위의 비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 나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일상적인 행위이며 아동학대 사실 자체를 판 단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요인임에도 법원은 여성의 직업적인 행위를 양형 판단의 과정에 가져왔다. 이는 성적 존재인 여성과 어머니는 양 립할 수 없다는 이중적 성규범이 전제되어 있는 판단이며, 결국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생활 양식이 어머니노릇을 행하는데 적합 하지 않다는 평가다. 본 연구에 이용된 판결문에서 유흥주점과 같이 성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명시된 피고인은 6 명으로 전부 여성이었으며, 혼인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미혼 3명, 사별 1명으로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전부 단독 양육 중인 여성이었다. 성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상당수가 미혼 여성이었다는 점은, 이중적 성규범에서 비롯된 섹슈얼리티 통제가 미 혼인 어머니에 대한 양형 판단 과정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하다.

어머니로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기제는 특히 미혼 여성이 피고인인 경우의 판결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과 바람직한 어머니상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통념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높아진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비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양형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미혼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유로운 "선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 관계 밖에 있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재생산 이슈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로 성문제의 측면으로 인식하는 모습은 미혼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서정애, 2009).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미혼모를 비난하는 태도가 지속되는 한편, 여성의 재생산권 실행이 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환원되는 상황 역시 목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거의 모든 것을 시장의 영역으로 넘김으로써 자본의 논리를 강화하고, 이 과정

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화된다(임옥희, 2011). 최은영(2014)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모성을 경험하는 개인 역시 합리적 선택의 주체로 호명된다고 본다. 모성에 기반한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은 개인의 능력과 연관되어 판단되며, 적절한 어머니노릇 수행의 실패 역시 여성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된다. 신자유주의의핵심인 '개인화'는 한국 사회에서 모성을 경유하여 어머니로서 여성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부각하는 형국이다. 구조의 책임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과 실패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논의가 처벌의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Wacquant, 2010[1999])을 고려하면, 개인화의 논리가 아동학대 처벌 판단 과정에서 여성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피해 아동의 친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사 건³⁹⁾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여성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홀로 아이를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후 출산하여 양육과 야간 근무를 병행하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 과정 에서 피고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귀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미혼모로서 양육의 부담을 홀로 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u>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피고인 스스로 초래</u>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판결문의 언설을 얼핏 보면 미혼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느꼈을 양육 부담과 경제적 스트레스를 참작해주는 것 같지만,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피고인 스스로 초래'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여성 개인에게 자녀 돌봄 실패의 일차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앞서살펴보았듯이 아동의 사망 당시에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결합하여 여성에 대한 비난이 강화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일상적 생활 양식이 미혼 여성으로서 마주한 양육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으로 제시되며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빈곤한 상황의 미혼 여성이 홀로 재생산 과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나 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충분한 사회구조적 조건 마련의 미비함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임신부터 양육까지의 과정

^{39) 2020.5.7.}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합8

을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담론이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도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의 문제를 여성의 개인적 선택으로 환원하여 판단하는 것은 출산 이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제도적 한계와 장애·국적 등이 교차하면서 심화하는 취약성을 도외시할 수 있다. 친모인 피고인이 영아인 자녀를 유기하여 생명에 위협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40)에서, 피고인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중상해로 기소되었다.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이주여성인 피고인은 법률상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울산에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양쪽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출산했다. 이후 교회를 통해 입양 절차를 알아보았으나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입양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직접 양육은 할 수 없다고판단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선고형의 결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양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현재 별다른 후유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모인 피고인이 태어난 지 한 달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하여 그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법원은 피고인이 이주여성으로서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전력 등 기타 법적 양형 요인만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리고 양형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아동 유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여성 개인에게 묻고 있다. 재판부는 여성이 자녀 출산 직후 입양처를 구하는 등 어떻게든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시도했으나 그것조차어렵게 만든 제도적 미비함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기보다는, 출산과양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온전히 여성의 자율적인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책임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일련의 재생산과정이 개인의 선택으로서 다뤄지는 한계를 보인다(추지현, 2021; 이

^{40) 2020.7.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68

재임, 2022)는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임신부터 출산, 아 동 유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젠더, 인종, 계급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여성의 취약성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누락된 채, 여성 개 인의 선택과 그 결과만이 남게 된다. 재생산권은 임신·출산·양육 전반 의 과정에 대한 개인의 결정과 통제 권한일 뿐만 아니라, 권리 실현 을 위한 조건 마련에 사회구조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자 율성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양현아, 2010; 전윤정, 2020; 김문정, 2021)임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위 사례들에서 법원은 여성이 일련의 재생산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돌봄 상황에 따른 양형 영향력을 분석했을 때 재생산 어려움형이 실형 선고에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다루는 법원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생산권 실 행의 사회구조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녀 보호의 일차적 책임 을 여성 개인에게 부과하는 형벌화 방식은,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추지현, 2021)는 점에서 그 한 계를 갖는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이 법원의 고려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미혼 여성이 홀로 감내해야 했을 양육의 어려움을 온정적으로 참작해주기도 하는데, 이때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양육 어려움을 심화하는 여성 개인의 취약성이다. 친모인 피고인이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을 일삼아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⁴¹⁾에서, 미혼인 여성은 홀로 아동을 출산한 후 위탁 양육을 맡겼으나 임시 위탁 기간이종료된 후, 양육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고립 상황에 마주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에 학대로 이어졌다는 범행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법원은 선고형의 결정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로부터의 폭행으로 <u>불우한 어린 시절</u>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출산 전 피해자의 친부와도 헤어져 피해자를 홀로 출산하고 양육하여야 하였으며 어떠한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감정의사(정신의학과) J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이 불안정한 성장 과정과 출산 과정 전후

^{41) 2020.1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48

로 겪은 폭언 등으로 <u>우울 정서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출산 후의 양육 부담이 피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이며, 이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겪고 있었던 산후우울증이 그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u>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판부는 여성이 홀로 견뎌야 했던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온정적으로 참작하고 있으나, 이때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양육 어려움으로 인해 초래된 스트레스와 우울증등의 취약성이다. 어머니노릇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한 개인적 어려움과 그 어려움으로 비롯된 심리적 문제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야기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성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온정적인 법적 판단은 미혼여성의 열악한 환경이 여성에게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그로 인한 무력감이 돌봄 어려움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사고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를 기점으로 영아살해 가해자로 미혼여성이 주목받으면서, 무능력하고 미성숙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며 온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던 법원의 태도(이재임, 2022)가 지금까지도 일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인 여성이 베이비박스 근처에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⁴²⁾에서, 법원은 여성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가출 이후 성매매로 인한 임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환경을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결문에 설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은 채 지냈고, 아기의 친부로 추정되는 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남자 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혼자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가 설치·운영 중이던 베이비박스 앞까지 갔음에도, 출산 직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u>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감에 시달려 왔고</u>, 이 사건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42) 2021.7.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66

법원은 피고인이 홀로 임신 및 출산 과정을 감내하면서 겪은 어려움에서 비롯된 여성의 정신적 어려움에 집중하여, 범행 경위를 온정적으로 고려하였다. 위의 사례들에서 법원은 여성의 양육 어려움과 관련하여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정신 병력 등의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취약성을 온정적으로 참작하고는 있으나, 여성의 재생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미혼 여성의 개인적 취약성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아동의 양육자로서 미혼 여성은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어머니라는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미혼 여성의 영아유기 및 방임을 비롯한 아동학대 상황에서 법원은 여성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재생산 과정의 어려움과 재생산권 실현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범행을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법원의 평가는 피고인 범행의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단서로 작용하여 양형 선고 과정에 부정적으로 참작되었다. 다만 항상 법원이 미혼 여성의 아동학대행위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었고, 단독양육자로서 여성이경험한 어려움을 온정적으로 참작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 고려된 것은 무력하고 취약한 미혼 여성의 상황과 개인적 특성이었고, 여전히 미혼 여성의 취약성과 양육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였다.

4절 소결

4장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양형 판단과 관련하여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 자녀 돌봄 상황을 중심으로 여성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정과 모성이데올로기의 작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첩 발생과 관련하여, 법원은 아내학대 사실 자체를 '가정불화'로 축소하며 인지하지 않거나 폭력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아내학대 사실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문제로만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가시적인 폭력 상황에만국한하여 아내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학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통제와 지배 기제를 누락한 채 여성에게 높은 수준의 자녀 보호

책임을 요구하는 법원의 남성중심적 관점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학대 여성을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무력 하고 수동적인 피해자 또는 아동학대에 공모한 어머니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내학대의 폭력적 상황에 집중하 여 폭력 피해에 무력한 여성의 모습을 부각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해 주는 식의 판단은 전형적인 피해자 담론을 강화하여 보호의 대상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는 기제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는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하는 자녀돌봄 상황에서 비롯된 여성 양육자의 취약성과 양육 어려움이 법원의처벌 판단 과정에 충분히 참작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돌봄과 생계 부양의 이중부담 속에서 장애와 빈곤이 교차하며 야기하는 여성의양육 어려움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돌봄 실패로 여겨져법원의 처벌 판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일차적돌봄제공자인 여성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남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경험하는 권력 불평등이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이 야기하는 통제적상황에서 수반된 여성의 의존성은 아동학대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과정에서 부수적으로만 다뤄졌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여성의 보호책임과 돌봄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에게 부과된 자녀 돌봄의 일차적 책임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법률혼 바깥의 관계에 있는 여성이 수행하는 어머니노릇이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평가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여성을 성적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이 특히 미혼 여성에게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법원은 바람직한 어머니상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미혼 여성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 수준을 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미혼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의 재생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환원하여 어머니노릇의 실패로 평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미혼 여성의 취약성과 양육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간과한채, 아동학대를 자녀 보호 의무를 방기한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다룬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행위자인 여성이 다양한 자녀 돌봄 상황에서 수행하는 어머니노릇과 양육 어려움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법원의 처벌 판단은 자녀 보호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개인화하며 일차적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지속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적 논의 안에서 자녀 돌봄 상황을 중심으로 어머니노릇 수행과 아동학대 발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맥락적 관점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여성이 가해 자로 부각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되면서 법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심화된 어머니노릇의 요구와 엄벌주의 기조는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 방식을 통제하고 개인화하는 방향으로 젠더화, 계층화되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노릇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돌봄의 조건이 아동학대 양형 결정에 작용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모성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아동학대 양형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중심으로, 자녀 돌 봄 조건이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징역형 선고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피해 아동에게 장애 및 행동어려움이 있 거나 피고인이 동거·미혼의 비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 여성 피고인 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학대 행위의 높은 비난가능성이 여성에게 더 엄격 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취약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돌봄 상황이 양형에 긍정적인 참작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혼인형태에서 동거·미혼 변수는 남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여부에서도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나 그 영향력이 여 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비법률혼 관계에서 자 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이 법적 판단 과정 에 더욱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아내학 대여부 변수가 여성과 남성 피고인 모두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학대 사실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발견이다.

3장에서는 자녀 돌봄의 조건들이 상호작용하여 구성하는 돌봄 상황에 따라 학대유형을 분류하고, 집단별 특성과 양육 상황의 차이를 비교했다. 학대유형은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돌봄 상황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남성통제형, 재생산어려움형. 기타 훈육형, 장애취약형으로 명명했다. 남성통제형은 대다수의 경우 보호 자 공동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내학대가 아동학대와 중첩적으 로 발생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통제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 정에서 어머니노릇이 수행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재생산어 려움형은 동거·미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의한 1세 미만 아동학대가 주요 특징이다. 이때 피고인이 단독 양육 상황인 경우가 4개 집단 중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특징을 통해 재생산어려움형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가 주로 단 독양육자인 미혼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의 재생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서 비롯된 아동학대임을 알 수 있었다. 장애취약형은 피고 본인과 피해자의 장애 및 행동어려움이 높게 나타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고 경제적 어려움 수준도 비교적 높았다. 이 러한 유형 특징을 통해. 해당 집단에 장애나 빈곤으로 인한 취약성과 양육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훈육형은 자녀 돌봄과 관련한 어려움이 두 드러지지 않아 돌봄 환경보다는 피고인 개인의 성격적 기질이나 훈육 목적 등의 기타 요인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 보았다. 해당 유형은 회귀분석의 기준집단으로 활용하였다.

이후에는 회귀분석을 통해 학대유형이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재생산어려움형과 장애취약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피고인이 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증가했는데, 이는 장애와 빈곤등이 교차하는 환경에서 비롯된 양육 부담과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아우르는 재생산 활동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같은 돌봄 상황의 구조적 취약성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남성통제형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의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2~3장의 분석 결과는 여성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에서 자녀 돌봄 상황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 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4장에서는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해 여 성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처벌 판단 과정에서 돌봄 상황이 고려되

는 방식과 어머니노릇 수행이 평가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법적 판 단에서 모성이데올로기의 작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에 대한 여성 의 학대 행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학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 파트너의 통제력을 간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내학대 사 실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만 다툼으로써 폭력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아내학대 행위는 처벌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기소 절차 전반의 남성중심적 관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피학 대 여성에게 자녀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면서도, 여성이 경험하는 피/가해의 맥락을 간과하고 이분법적으로 평가함으 로써 피해자 자격 담론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어머 니노릇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이 교차하는 돌봄 상황에 놓인 여성의 이중부담과 돌봄 어려움, 일차적 돌봄제공자인 여성이 놓인 가정 내 의존관계로 인한 취약성을 간과하거나 학대 사 실의 인정 및 양형 판단 과정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법원의 태 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여성을 자녀 돌봄의 일 차적 주체로 상정하는 담론과 맞닿아있으며, 어머니로서 여성 개인의 돌봄 부담감을 심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으로 법원은 아동학대 상황에서 여성의 어머니노릇 실패를 개인의 선 택과 책임으로 환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혼여성에 대한 이중 적 성규범이 작동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재 생산권 실행 과정을 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환원하여 아동학대행 위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여 성들이 장애와 빈곤, 노동시장의 구조와 재생산권의 교차 속에서 엄 마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어머니노릇 수행의 상황 이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기보다. 여성 개인의 양육 태도와 선택에 집중하는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는 그간 분절적으로 다뤄져 온 모성 실천과 아동학대 문제를 연계적으로 설명하고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의 조건 및 상황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모성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 양식을 규율 하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처벌강화가 핵심적으로 제시되 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아동 양육을 둘러싼 돌봄 상황이 법적 논 의의 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 해 돌봄의 맥락적이고 사회구조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학대행위자 개 인의 특성과 책임에 주목하는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 가 돌봄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단순히 개인의 양육 환경을 넘어서 돌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맥락을 포괄하는 논의로 확장될 필요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 제시되는 정보만으로는 여성이 수행하는 어머니노릇과 돌봄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제공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인터뷰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자료 등 기타 자료의 활용을 통해, 어머니로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돌봄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들을 포착하는 작업이 앞으로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어머니노릇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상황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에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에, 남성 가해자에 대한 처벌 판단 과정까지는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통계분석을통해 쟁점으로 도출된 법률혼 바깥에 있는 남성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태도나,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동시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처벌판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가. 학술논문

- 김경희, 김유나, 심의선, 이태인 (2022). "한국아동학대의 유형파악을 위한 잠 재프로파일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9(4): 181-207.
- 김기현, 유비, 김경희 (2020). "학대발생가정 유형화와 발달단계별 특성". 한국 사회복지학 72(3): 181-211.
- 김나현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김문정 (2021). "낙태죄 헌법불합치와 자기결정권: '비지배 자유'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유리학회지 24(3): 287-302.
- 김미라, 배은경 (2021). "가족과 젠더를 넘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하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 구 54: 491-531.
- 김성천, 김솔아 (2015).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이 발달장애 자녀의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2: 279-308.
- 김성희, 성현준, 성나경 (2021a). "한국 영아살해 고찰". 교정연구 31(2): 3-28.
- 김성희, 성현준, 성나경 (2021b). "조현병 환자의 친밀한 파트너 살인 특성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17(3): 37-60.
- 김수정 (202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범죄 양형". 한국사회복지학 72(2): 259-287.
- 김영란 (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 189-226.
- 김정란 (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중학생 자녀의 아내학대 목격과 자녀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지 21(5): 171-180.
- 김정혜 (2009).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에서 '피해'와 '처벌불원'의 의미: 아내폭력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1(2): 163-195.
- 김재엽, 정윤경, 이근영 (2008). "아내폭력 재피해 경험이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관계망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6(8): 85-95.

- 김재엽, 이지현, 송향주 (2009).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자녀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323-348.
- 김진영, 강혜원, 박지선 (2020). "아동학대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545-555.
- 김향수, 배은경 (2013). "자녀의 질환에 대한 모성 비난과 '아토피 엄마'의 경험". 페미니즘연구 13(1): 1-46.
- 김형모 (2002).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5집: 31-52.
- 김형모, 김영민 (2007). "부부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1(1): 31-60.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문화 6(1): 7-41.
- 김혜정 (2019). "미투운동 이후 담론 전략들의 쟁투와 반성폭력운동의 과제". 페미니즘연구 19(2): 123-143.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과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 박명숙 (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 박미랑 (2013). "가정폭력, 가족간살인, 그리고 판결문속의 가부장적 이데올로 기 읽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2: 105-142.
- 박언주 (2014).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모성경험의 구성과 행위성". 한국여성학 30(1): 173-212.
- 박연주, 김봉선 (20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 판결 비교: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양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3), 139-157.
- 박연주, 한창근 (2020). "훈육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사건 판례에 대한 고찰". 한 국아동복지학 69(1): 29-55.
- 박정민, 정훈영 (2017). "일반 유아 부모와 발달지체 유아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부담감에 따른 가족건강성 비교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41-61.
- 박철현 (2011). "성에 따른 양형의 편차 도주차량범죄의 사례". 범죄와 비행

- 창간호: 97-119.
- 박형관 (2018). "경합범의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59): 183-237.
- 박희창, 조광현 (2006). "사회지표조사 자료의 K-평균 군집분석". 한국자료분 석학회 7(2): 465-476.
- 배화옥, 강지영 (2020). "아동학대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 연구 일회재학대 와 반복재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9(3): 145-171.
- 백영경 (2013). "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한국의 낙태논쟁에서 여성 경험의 재현과 전문성의 정치 문제". 아시아여성연구 52(2): 43-72.
- 서정애 (2009). "십대여성의 임신과 '모성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지선, 이수정 (2007).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한 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1-17.
- 신나래, 박언주 (2019). "가정폭력과 재생산 통제". 한국여성학 35(1): 151-182.
- 안소영, 안현주 (2020).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아동학 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135-174.
- 안숙영 (2017). "젠더와 돌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2): 107-136.
- 안지영, 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 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1-16.
- 양현아 (2006a).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 1-45.
- _____ (2006b).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 47(3): 254-283.
- _____ (2010).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4): 63-100.
- 양혜원 (2007). "아내폭력 피해 여성의 어머니역할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과 문화 19(4): 45-74.
- 오세현 (2021). "아동학대 뉴스와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분석: 아동학대정책 주 요변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2015). "아동학대 가해부모의 법적 조치 분석". 사회과학연구 31(3): 1-20.
- 이경선 (2016). "중증 지체장애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교류분석상 담연구 6(1): 1-26.
- 이래혁 (2023). "코로나19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부정적 생활변화가 우울을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한부모가족 유형별 차이". 한국 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25(1): 67-93.
- 이민식 (2005). "성과 양형: 마약류사범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6(1): 155-196.
- 이민식 (2018).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학 12(3): 51-68.
- 이민식, 김혜선 (2009). "LSI-R을 이용한 성별·범죄유형별 재범유발요인". 형 사정책연구 20(1): 157-187.
- 이봉주, 장희선 (2021).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 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0(1): 1-34.
- 이세원 (2015).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7(2): 113-136.
- _____ (2017).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 인자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 구 8(2): 125-157.
- _____ (2020).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자로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113-141.
- 이소현 (2022). "아동학대의 재현과 모성 신화: <미쓰백>과 <어린 의뢰인>의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6): 194-207.
- 이재경 (2004). "노동자계급 여성의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구성과 갈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1): 82-117.
- 이재경, 박명숙 (2014). "다문화가정의 아동하대 발생 위험요인으로써의 남편의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1-25.
- 이재임 (2021). "일본군'위안부'피해와 피해자의 의미: 한일청구권협정 부작 위 위헌소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22). "낙태와 아동학대 사이에서: 영아살해 처벌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2010-2022년", 젠더와 문화 15(2): 255-292.

- 이진희, 배은경 (2013). "완벽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 mother)로". 페미니즘연구 13(2): 35-75.
- 이호중 (2013).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신자유주의 안전 담론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5(43): 269-309.
- 임옥희 (2011). "신자유주의 시대와 젠더무의식". 젠더와 문화 4(2): 37-70.
- 장덕희 (2010). "부부폭력 목격경험에 따른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청소 년학연구 17(1): 143-166.
- 전윤정 (2020). "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페미니즘연구 20(1): 3-36.
- 정선영 (2020). "가구소득 수준이 아동이 인식한 방임 및 학대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2): 1-26.
-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8). "트위터와 뉴스기사 분석을 통해 본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665-678.
-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4): 79-100.
- 정익중, 최선영, 정수정, 박나래, 김유리 (2016).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8(2): 131-160.
- 정주영 (2019). "여성수형자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탐구 5(3): 1-36.
- 정혜숙 (2006).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의 생존(survival)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4): 237-263.
- ____ (2009).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비판모델 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 한국여성학 25(4): 109-139.
- 조미숙 (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6-326.
- 조연민 (201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형벌국가의 등장-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에 대한 비판범죄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4: 445-505.
- 조은 (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26(1): 69-95.
- 조은경, 강동욱 (2020).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실효적 보호 방안". 비교

- 법연구 20(2): 217-251.
- 조정우 (2006). "K-평균 군집화를 이용한 분류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2019). "여성 한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정책연구 19(2): 49-66.
- 최문정 (2010). "장애여성의 모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 적연구 4(1): 91-117.
- 최은영 (2014). "한국 여성의 모성 기획과 균열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지현 (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30(3): 45-84.
- ____ (2021). "아동학대에 대한 젠더 분석: 남성성, 돌봄, 재생산권". 형사정 책연구 32(4): 33-61.
- 허민숙 (2012).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연구 12(2): 69-103.
- 홍승아, 이영미 (2009).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48(1): 119-158.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황정미 (2018). "가정 내 위험요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숙 (2021). "중산층 전업 어머니의 자녀교육 경험과 모성 재구성에 관한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31(4): 245-275.
- 황환, 이병록 (2019). "학부모의 가족탄력성, 아동학대예방교육경험, 학대행위 인식의 구조적 관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7(10): 519-526.
- Chen, G., Nicotra, E., Haviv, N., & Toys, S. (2021). "Parent-to-Child Violence: Does Gender Matter in Sentencing Decisions?". *Crime&Delinquency: 1-23.
- de Vogel, V., & de Spa, E. (2019). Gender differences in violent offending: Results from a multicentre comparison study in Dutch forensic psychiatry. *Psychology Crime and Law* 25(7): 739-751.
- Doerner, J. K., & Demuth, S. (2014). Gender and sentencing in the federal

- courts: Are women treated more leniently?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5(2): 242-269.
- Fox, M. (2000). "3. Feminist perspective on theories of punishment". in FEMINIST PERSPECTIVES ON CRIMINAL LAW, Nicolson, D. & Bibbings, L. (ed). London, Sydney: Cavendish Publishing: 49-70.
- Gelsthrope, L. (2010). "Women, crime and control".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0(4): 375-386.
- Haight, W. L., W. S. Shim, L. M. Linn & L. Swinford. (2007). "Mothers' Strategies for Protecting Children from Batterers: The Perspectives of Battered Women Involved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Child Welfare* 86(4): 41-62.
- Hanrath, L., & Font, S. (2020). "Gender Disparity in Pennsylvania Child Abuse and Neglect Sentencing Outcomes". *Crime&Delinquency* 66(12): 1703-1728
- Maher, L. (1993). "Punishment and Welfare: Crack Cocaine and the Regulation of Mothering". The Criminalization of a Woman's Bod y_J . Claire Feinman(ed). New York: Hariington Park.
- Work: Gender, Race, and Resistance in a Brooklyn Drug Mark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 Fernando R., Theodore R. C., & Gang Lee. (2006). Gender Differences in Criminal Sentencing: Do Effects Vary Across Violent, Property, and Drug Offenses?. *Social Science Quarterly* 87(2).
- West, D. A. & Lichtenstein, B. (2006). "Andrea Yates and the Criminalization of the Filicidal Maternal Body". Feminist Criminology 1(3): 173-187.

나. 단행본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사회과학 자료분석」. 서울: 인간과복지.

보건복지부 (2022).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_____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______ (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배은경 (2012). "5장 '저출산'과 가족계획사업의 유산".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산업」. 서울: 시간여행.
- 배호중, 정가원, 박미진, 선보영, 성경 (2022).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윤주 (2017).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elknap, Joanne. 2007.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3rd Edition. Wadsworth. 윤옥경·강은영·김지선·신연희·전영실 옮김 (2009). 「여성 범죄론: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서울: 교우사.
- Kittay, Eva Feder.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김희강·나상원 옮김 (2016). 「돌봄: 사랑의 노동」. 서울: 박영사.
- Ruddick, Sara. 1995.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Boston: Beacon Press. 이혜정 옮김 (2002).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 Wacquant, L. 1999. "Les prisons de la misère". 류재화 옮김 (2010). 「가난 을 엄벌하다」. 서울: 시사인북.

다. 기타자료

- 김세원 (2016). "아동학대 가해자 및 주양육자의 특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57-569.
- 이봉주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 현황과 개선 과제: 코로나19 경험을 중심으로".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발표 자료 pp. 731-749.

Abstract

Gender Analysis of the Sentencing on Child Abuse

Focusing on the Court Judgment
 to Child Care Situation of Mother -

Kwak, Jungw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social interest in child abuse cases increases, 'mother' is highlighted as the perpetrator, and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ce of the law is expanding as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 is considered the main soluti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look at the legal judgment on child abuse focusing on the care performed by women.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situation of child care, which affects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on the sentencing for the defendant and the aspect dealt with in the court's judgment of punishment. To this end, a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child abuse cases that could examine the care situation in which child occurred and the sentencing decision process perpetrator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ocusing on the conditions for caring affecting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it was analyzed whether female and male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prison. In the case of female defendants, when the victim child is disabled or the woman is in a marital status like single or cohabit, the likelihood of being sentenced to prison increases rather than probation. The variables of marital status on single or cohabit also acted positively(+) on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of male defendants, but the influence was greater to female defendants. Other conditions for caring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whether sentenced to imprisonment both female and male defendant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wife abuse variable did not affect the sentencing judgment to child abuse facts of male defendants.

In that mothering is performed within a child care situation in compos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each conditions of caring, child situations categorized abuse were into four groups ("Male-control type" / "Performing reproductive rights difficult type" / "Discipline type" / "Disability vulnerable type"), focusing on the child care situation. The groups of 'Performing reproductive rights difficult type' and 'Disability vulnerable typ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hether sentenced to imprisonment of the defendant, and it acted positively on the sentence to imprisonment. On the other hand, the 'Male-control type', characterized by a high overlapping occurrence of wife abuse and child abuse,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whether sentenced to imprisonment of defendants.

The court judgment to child care situation revealed as a major issue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is as follows. The overall problem of the legal prosecution process was identified, which reduced the fact of wife abuse to family troubles or pay attention only to abuse that was noticeable of physical violence. This was found to be a dichotomy evaluation that overlooks the contexts of experience throughout victims/criminals of women under the control of a male partner at home, and that they are helpless and passive victims or mothers who are conspirators of child abuse. It also found the attitude of the courts about considering women's double burden and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as secondary

problems in care situations where disability and poverty intersect. In particular, the sexuality of single mothers is controlled based on double standard toward sexual morality for single women. In addition, as the failure of mothering in the reproductive process was considered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and responsibility, criticism of child abuse behavior was strengthen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n attempt to explain connectionally the problems of mothering experience and child abuse that have been dealt with segmentally. In a situation where the power of the law is strengthened in the discourse of child abuse, the care situation that affects child rearing needs to be dealt with more importantly in the field of legal discussion. This should be extended beyond simply considering and improving the individual's parenting environment to discussions that encompass the social—structural context of care itself.

keywords : child abuse, sentencing, punishment, gender, caring,

mothering

Student Number: 2020-23894